대구 · 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 주 최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 주 관 : 국회의원 남인순, 금태섭, 김삼화, 이재정

Contents

○ **인사말 및 축사** 1

국회의원 남인순 ····· 1
국회의원 금태섭 ····· 3
국회의원 김삼화 ····· 5
국회의원 이재정 ····· 7
(사)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 ····· 9

○ **축 사** 11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11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경과보고** 13

○ **제도 개선 제안** 23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 25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61
대구사건으로 본 아동학대 예방체계 제도 개선 방안
제충만 대리(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 ····· 73
친부모 양육지원 방안
목경화 전대표(한국미혼모가족협회) ····· 83

○ **토 론** 91

고경석 회장(한국입양홍보회) ····· 93
김외선 소장(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 95
유주헌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99
김가로 과장(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101
우철문 과장(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103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11
안문희 연구위원(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 115

인 사 말

국회의원 **남인순**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여성가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작년 여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와 포천에서 입양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클림비라는 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후 왜 클림비가 사망했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제도개선을 위한 클림비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만 생각할 뿐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난 2013년에도 울주에서 한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뜻 있는 전문가, 시민단체가 모여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개선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는 대구나 포천에서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금태섭·김삼화·이재정 의원님과 탁틴내일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법조인분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은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며 직접 아이를 키우려 노력하던 은비 엄마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더 많은 복지혜택이 제

공되었더라면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비를 맡아서 돌봤던 입양기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양부모를 연결해 줬다면 1차 예비입양 후 파양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예비입양가정과 2차 예비입양가정에서 연장아인 은비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 등 연장아 입양 가정을 위한 더 많은 도움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은비가 처음 응급실을 갔을 때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좀 더 꼼꼼하게 사건 조사를 했더라면 은비가 사망에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함께 해 주시고 진상조사위원회 사무국을 맡아 활동해 주신 (사)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님 오늘 경과보고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노혜련 교수님, 김진석 교수님, 제충만 대리님, 목경화 전 대표님 감사합니다.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고경석 회장님, 김외선 소장님, 유주헌 과장님, 김가로 과장님, 우철문 과장님, 장화정 관장님, 안문희 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입양제도 개선방안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진상조사가 오늘과 같이 몇몇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위주가 아닌 정부 위주로 진행되도록 제도화 되어 아동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는 진상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뤘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입양제도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국회의원 **금태섭**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작년, 대구와 포천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현재 입양 절차와 입양 관련법의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예비양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입양원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예비부모에게 필요한 사전교육과 양육훈련이 부족했고 사후상담과 지원 또한 부족했습니다. 사랑 받고 보호 받아야할 아이들이 사망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은 우리 입양 아동의 가슴 아픈 현주소입니다.

입양 아동의 아픔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지원의 부재 속에서 입양을 권유받습니다. 부실한 입양 절차로 아동 학대 위험이 있는 양부모도 별 문제없이 입양을 합니다. 이후, 아이는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고통 받습니다.

이에 아동 학대 근절과 입양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십분 공감하고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입양허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양 조사관제도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허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저는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의 적극적인 진상 조사 활동과 더불어 현행 입양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 제안을 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행 입양 제도가 개선되고 아동학대 예방제도가 정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국회의원 **김삼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김삼화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수 십여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하며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해 오신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신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님과 금태섭, 이재정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상조사 경과보고를 해주시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님을 비롯하여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구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단순 사망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이신 참석자들을 비롯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함으로써 그동안 암암리에 묵인됐던 입양 절차, 지원, 기관 등의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친부모와 아동의 권리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입양기관에 떠넘겼으며, 입양 아동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입양 아동을 학대의 사각지대에 밀어 넣었습니다. 또한 한부모나 미혼모의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적은 지원으로인해 친부모들이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입양아동은 880명에 달합니다. 2015년 1057명에 비해 16.7% 감소했지만, 아직도 880명의 아동이 친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경제력 부재, 각종 편견, 직업과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미혼모 가정이 입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녀의 양육과 취업, 주거 등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문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와 함께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친부모와 입양 아동이 처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불가피한 입양을 막아야합니다.

입양 상담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친부모에게 보육비 지원 등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현행 10~15만원에 불과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또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를 통해 진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양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진상조사위원회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친부모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국회의원 **이재정**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아동권리헌장 중 하나의 조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아이들은 지켜주지 못한 채 떠나보내거나, 상처만을 남긴 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예방제도 개선방안 결과 보고회야 말로 우리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보고회의 중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의 경우 너무도 많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 누구도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른됨이 부끄러워지는 참혹한 범죄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는 알아야 하며, 아이는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의 붕괴를 막아내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안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보고회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고

회 이후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고회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사)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

2013년 울주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민간단체들과 국회의원이 모여 함께 진상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느끼고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6년 또다시 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대구에서 입양체험 중이던 3세 아이 은비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가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포천에서 입양 아동이 처참하게 학대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은비도 결국 뇌사판정 받은지 7개월되던 1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이 다 입양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공통점이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안타깝게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추방됐던 한 입양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84년 입양 당시 부모가 미국 관공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 무국적자 신분으로 성장했고 이후 범법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국적자로 강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 5년간 자신에 관한 기록과 부모를 찾으려 애를 썼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투신해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고 타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입양 과정 전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 국회의원, 단체, 학계에서 모여 2016년 10월21일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7개월 동안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양과정에서 UN아동권리협약 제3조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민의 결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시작으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이 학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입양 아동의 입장에서 입양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축 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존경하는 남인순·금태섭·김삼화·이재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포천과 대구에서 일어난 입양아동 사망 사건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현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짚어보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마침 시의적절한 자리를 준비해주셔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입양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국내 1,125명 국외 755명으로 총 1,880명 이었습니다만 점차 줄어들더니 2015년에는 국내 683명 국외 374명으로 총 1,057명으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베이비박스에는 2011년에는 24명의 아기가 들어왔는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200여명이 넘게 들어오면서 입양은 줄고, 아이를 버리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입양까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정비를 비롯하여 어느 부분이 키워나가고, 어느 부분을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입양을 장려하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사회적 편견에 부딪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입양아동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살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의견들은 존경하는 남인순·금태섭·김삼화·이재정 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경과보고

대구 · 포천 입양아동 학대 ·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경과보고

Wednesday, May 31, 2017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기댈 곳 하나없던 다섯살 인생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미혼모의 입양, 선택 아닌 선택

2012년 6월 은비(가명)가 미혼모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느라 늘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키워야 했던 엄마는
'시설에서 크는 아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세 살 은비를 입양원에 맡겼습니다.



- 한 부모 가정에서도 아이를 충분히 보살필 수 있도록 양육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족, 멍든 기억



은비는 이내 동탄의 한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예비 양부모는 아이를 키울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은비를 따뜻하게 품을 수 없었던 이들은 '정이 안간다'며
은비를 입양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한 달 만에 은비는 대구의 다른 가정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 예비 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입양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양부모가 아이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아이를 맡을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을 바꾸어야 합니다.

허술하고 안일했던 어른들



대구에서 살게 된 지 5개월째,
은비가 의식을 잃어 입원했습니다.

온 몸에 든 멍과 상처를 본 의사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입양 부모와 알고 지내던 다른 의사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되돌아갔습니다.

-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을 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조사하고 아동의 상태를 살피도록 해야합니다.

별 일 아닌 줄 알았던 별 일



세 달 뒤 은비가 다른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입원했습니다.
양아버지의 체벌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에도 아이의 몸은 멍 투성이 였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외부의 힘으로 든 멍 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아버지는
"나는 아이를 가르치려고 벌을 줬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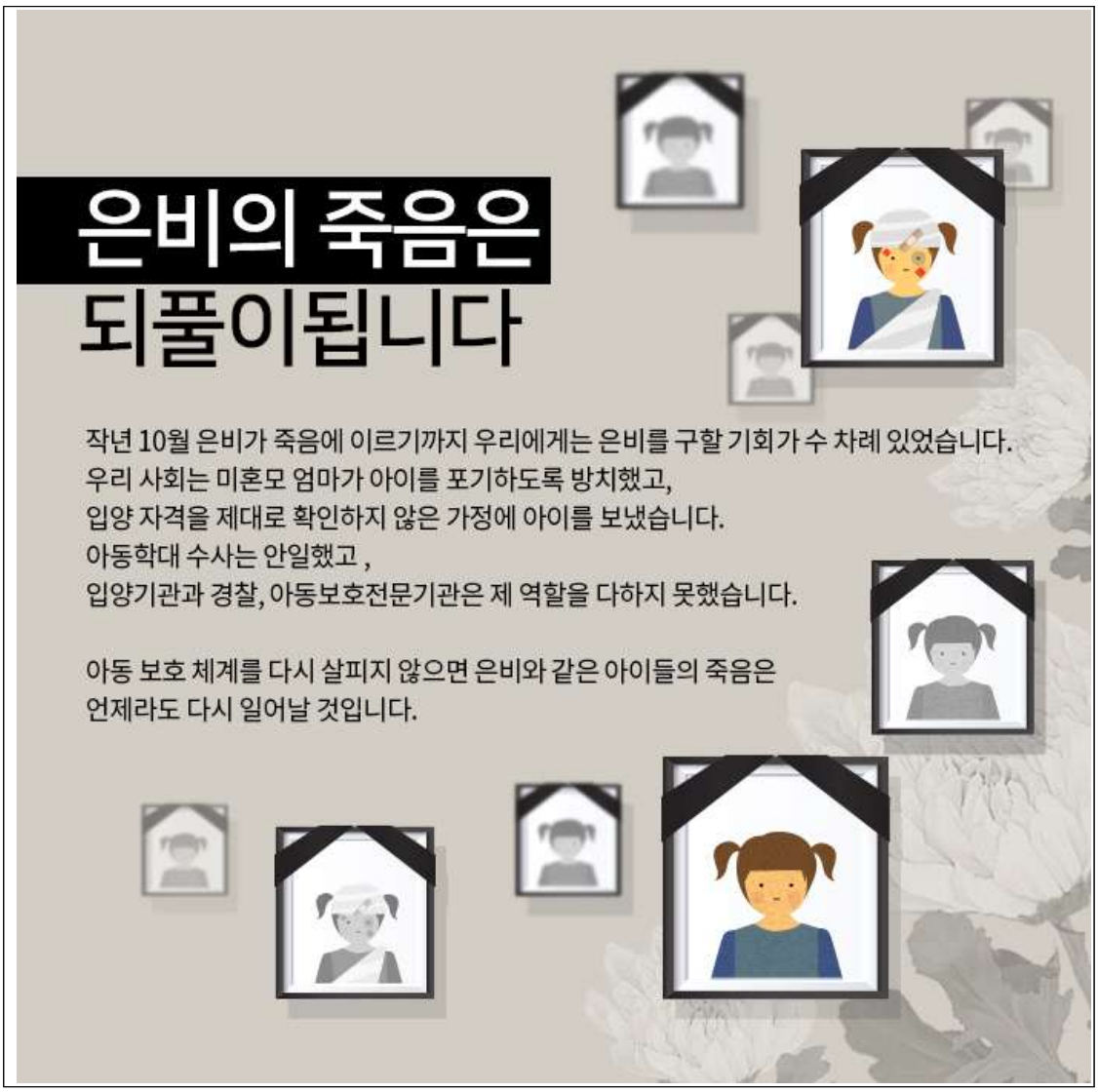
이제 입양하셔도 됩니다?



은비가 입양 부모의 학대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진 지 1주일.
아동 학대 사실과 은비의 상태를 알지 못했던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6월 입양원 측의 서류만 믿고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아이를 학대한 바로 그 입양 부모에게 아이의 친권을 넘겨주었습니다.



- 입양 업무에서 아동의 입장을 가장 먼저 생각하도록 입양 절차를 개선해야합니다.


은비의 죽음은
되풀이됩니다
작년 10월 은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은비를 구할 기회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혼모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도록 방치했고,
입양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정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아동학대 수사는 안일했고 ,
입양기관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동 보호 체계를 다시 살피지 않으면 은비와 같은 아이들의 죽음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경과보고

2016. 10. 21. 기자회견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조사위원회를 발족.

2016년 10월 21일 10시
대구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진행

공판 법정모니터링 진행

"입양아동 학대 진상조사, 제도개선"

시민단체 민간조사위 발족 … "입양아동인권보장법" 제안

2016-10-24 11:10:02 게재

대구와 포천지역에서 발생된 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입양아동에 학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정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민간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탁틴내일과 세이브더칠드런 등 13개 시민단체들은 2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8월 대구 입양아 학대 뇌사사건과 9월 포천의 입양아동 상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상세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입양아동의 학대예방과 안전한 입양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진상조사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 발족 | 2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출범 및 법정모니터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제도개선위원회 제공

2016.11.22. 대책위 발족식

입양아동 학대 근절,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입양아동 학대 근절,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단체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뿌리의집, 재)동천, 사)들꽃청소년세상, 사)두루, 사)탁틴내일,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대학교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한부모가족연합, 한국방정환재단, 한국 YWCA 전국연맹,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조사 진행 과정



실무팀 구성

사무국 | 입양팀 | 학대팀 | 법원팀 | 친모팀

현장조사 진행 과정

2016년 10월~ 2017년 1월

2016. 10.31 보건복지부와 법원 대상 서면질의

2016.11. 현장조사 서류와 서면답변 내용을 검토, 대면조사 진행

2016.12.16. 현장조사팀 구성(10명)
A병원, B경찰서, C병원, D경찰서, E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2017.1.13. 000입양원 방문 현장조사 진행(조사팀 7명)

2017. 03.03
진상조사위원회 워크샵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

아동보호 체계상의 개선안을 위한
최종안 논의

2017. 03.08
보건복지부 간담회

조사위의 의견을 제시
담당부처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질의

입양단체 부모 간담회

2017년 3월 15일 (수) 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입양단체 및 입양부모
간담회 진행



함께 지켜봐주세요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세요.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국회의원 금태섭·김삼화·남인순·이재정(공동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사)두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화된미래를위한미혼모협회인트리, 뿌리의집,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 사)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제도 개선 제안

1.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혜련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2.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3. 대구사건으로 본 아동학대 예방체계 제도 개선방안
   제충만 대리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
4. 친부모 양육지원
   목경화 전대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입양은 친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새로운 가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영구대리 보호서비스'이다. 또한,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새 가족을 구성하는 사회적, 법적 과정으로(Costin, Bell & Downs, 1991), 아동과 친생부모 간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 부모-자녀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다(노혜련·김미원·조소연, 2015). 입양은 한 사람의 평생과 관련된 문제로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친생부모는 물론 이들 입양 삼자 각자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결과는 입양 삼자가 행동·정서 또는 인간관계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Winkler, Brown, Keppel & Blanchard, 1988). 입양은 특히 입양아동이 어디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서비스로서 아동복지사업 중 아동의 평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입양실천의 전과정이 그 누구보다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장하는 방식 즉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실천은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급증한 고아와 혼혈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입양절차를 마련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입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진행하다가 2011년 입양절차를 강화하여 친생가족의 양육 우선이라는 원칙을 실현할 목적으로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2000년에 시작한 한국입양홍보회의 공개입양 활동과 맞물려 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입양비용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의료급여 1종, 심리치료 비용 지원 등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었다. 더불어 입양은 '좋은 일'이며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인식(가톨릭신문, 2016)이 자리 잡으며 한 아이라도 더 빨리 입양가정의 품에 안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SBS 뉴스, 2015). 이렇게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은 입양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한 입양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실천은 [대구와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을 낳았고, 사건의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이미 60년이 넘은 역사에도 우리나라 입양실천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구와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정과 선행 연구와 기존 자료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입양

실천의 현황과 문제점을 입양 전 가정조사와 예비입양 부모교육, 입양과정 중 아동 결연과 입양 전제 가정위탁, 입양 후 사후 서비스,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격과 보수교육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선행연구와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의 입양실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입양실천이 아동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이다.[1)]

Ⅰ. 우리나라 입양실천 현황과 문제점

1. 입양 전 실천 현황과 문제점

가의 계승을 위해 친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단순입양과는 달리 친생부모의 보호가 불가능하므로 아동 양육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인 대체 가족을 만들어주는 완전입양 제도의 특징은 첫째, 아동의 입양 적격 결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하는 것과 둘째, 입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양육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이경은, 2017).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후자(완전입양)와 관련한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조사: 예비 입양 부모 평가와 준비 과정

가정조사는 모든 예비 입양가족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예비 입양가족을 교육하고 준비한다. 둘째, 예비 입양 가족이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합한지, 입양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예비 입양 가족이 어떤 아동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하면서 양육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한다. 입양은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가정조사 과정은 입양부모가 한평생 입양아동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양육할 가정환경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 입양인의 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는 입양인과 입양가정 간의 관계이다(박인선, 1994). 입양부모는 아동을 지속해서 애정으로 보호·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예비 입양 부모의 자격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입양기관과 종사자는 아동 최선의 이익 판단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에 따르면 양친가정조사서에는 ⑴ 입양에 대한 태도와 입양 동기, ⑵ 양친이 될 사람의 혼인생활, 그 밖의 가족 상황, ⑶ 양친이 될 사람의 현재 수입과 재산상태, ⑷ 양친이 될 사람의 알코올 등 약물중독 여부와 그 밖의

1) 입양실천에서는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본 토론회에서 '원가정 보호와 지원'에 관한 발제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

건강 상태, ⑸ 양친이 될 사람의 인격·품성과 종교관 등, ⑹ 그 밖의 특기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고, 맨 마지막에 조사자의 의견을 적게 되어 있다. 또한, 가정조사는 가정과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1회 이상은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여 조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 입양가정에서 사망한 은비의 1차 예비 입양 부모가 입양기관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양 전제 가정위탁[2]으로 집으로 데려가기까지 총 4개월 20여 일이 걸렸다. 선보기 후 결연 의사 확인, 면회, 가정체험을 차례대로 진행한 후 입양 전제 가정위탁을 결정하였다. 반면 2차 예비 입양 부모가 은비를 집으로 데려간 절차는 더욱 간소했다. 2차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입양 전제 가정위탁을 개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1개월 10일 정도였다. 아동 선보기와 결연의사 확인, 가정체험의 개시는 모두 같은 날 양친가정조사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 별도의 면회나 가정방문은 없었고, 단계별 평가도 부재했다. 또한, 2차 예비 양부모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입양기관 원장이 긴급중재로 개입한 후에도 양육 상황이나 아동의 복리 상태에 대한 후속적인 평가 조치 없이 같은 날 입양 전제 가정위탁으로 전환하였다.

A기관에서 입양을 전제로 은비를 위탁한 두 가정의 가정조사 과정을 보면 단계별로 사례에 개입하는 종사자가 달랐다. A기관의 경우 보육교사와 입양상담원으로 체계를 이원화하고 있어 보육교사는 아동의 보육만을 전담하고, 입양 절차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입양상담 업무는 초기 아동 인테이크 상담(친생모 대상)과 예비양부모를 상대하는 입양상담 업무로 분리하고 있었다. 입양상담 절차에서 입양상담원은 일반적인 서류 절차와 가정방문 등을 맡아 진행하였고, 예비 양부모의 기관 내방 상담, 아동 선보기와 결연 절차는 원장과 부장이 진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조사 과정은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욕구를 잘 충족하고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할 뿐 아니라, 입양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 일인지를 교육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예비 입양 가정조사 전 과정은 한 명의 입양전문가가 담당하면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소통하며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A기관에서처럼 가정조사 과정이 분절된 상태에서 5~6명의 입양상담원이 관여하면 은비와 같이 분리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비 입양부모를 교육하고 준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비가정에 그러한 양육능력이 있는지도 적절히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허술하고도 비전문적인 입양실천은 결국 대구 사건과 같이 입양아동의 사망뿐 아니라 훌륭한 입양가정으로 존경받던 가정의 파멸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한다.

2)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란 입양 대상 아동이 법원 허가가 나기 전에 애착 형성과 안전한 적응을 위해 결연된 입양가정에서 위탁의 형태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비 입양 부모 교육

입양가정은 일반가정보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입양부모가 입양가정과 일반가정의 차이를 편안하게 수용하고 입양아동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울 때 아동들도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날 수 있다(Noh, 1989). 따라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은 입양 이후 삶의 여러 문제를 조망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필요하다. 또한, 부모에 대한 준비뿐 아니라 부모를 관찰·평가하는 가정조사의 일부로서 담당 실무자는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 입양 부모를 관찰하고 입양 부모가 지녀야 할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하루 8시간,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체 교육은 대부분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는 입양기관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입양부모가 담당한다. 교육 인원은 평균 40명 내외이며 부부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4대 입양기관이 시행하는 예비입양 부모교육 운영 형태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입양기관 예비 입양부모 교육 운영 비교

분류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방법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관람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관람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관람 소그룹토의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관람
강사	실무자 학계전문가 입양부모	실무자 학계전문가 입양부모	실무자 학계전문가 입양부모 입양청소년	실무자 학계전문가 입양부모
교육인원	40명 내외	40명 내외	40명 내외	40명 내외
교육내용 (공통)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와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부모 사례발표			

출처: 변미희·안재진·강지현, 2015

진상조사위원회에서 A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비의 1차 예비 입양 부모 또한 8시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은 부모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과 입양 실무 매뉴얼이 제시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표 2> 은비의 1차 예비 입양부모 교육내용(2015.6.13.)

교육 영역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일자 (시간)	강사명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 입양과정 및 절차 - 입양의 효과	시청각자료 강의	2015.6.13. (1.0)	임상심리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안내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부모경험 나누기 - 자녀양육방법 (애착증진)	사례발표 강의	2015.6.13 (2.0)	입양모 심리학박사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인 사례 나누기 - 입양아동 심리, 정서 - 입양부모준비	사례발표 강의	2015.6.13. (2.0)	입양인1 입양인2 A기관 원장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사후서비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입양가족모임 소개	강의 시청각자료	2015.6.13. (1.0)	A기관 사회복지사1 A기관 사회복지사2
기타	-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강의	2015.6.13. (0.6)	A기관 사회복지사2
	- 입양관련 영상물 시청	시청각자료	(0.4)	A기관 원장
	- 소그룹활동, Q&A	토의	(1.0)	A기관 입양상담부장

출처: A기관, 2016.

은비의 2차 예비 입양부모는 2015년 12월 5일 하루 8시간에 걸쳐 <표 3>과 같이 입양부모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은 1차 부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장아 입양 준비'라는 주제의 교육은 부모가 은비를 처음 선보고 집으로 데리고 간 날(2015. 12. 19.) 원장이 시행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미 입양전제 가정위탁이 이루어진 후에 원장이 개인적으로 설명한 것을 부모교육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 이루어진 후 은비의 불안 행동에 대해 원장이 총 7회, 가정방문과 전화통화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한 것으로 보아 아동의 배치 전 연장아 입양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A기관에서 이루어진 교육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입양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예비 입양부모교육은 일회성 교육이고, 모든 교육을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예비 입양 부모가 자신의 삶과 입양 동기 등을 성찰하고 입양 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 등을 숙고하고 입양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하게 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전체 8시간 중 2시간을 입양 절차, 지원, 사후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전달에 할애하고, 입양의 주요 이슈를 다루거나 입양가족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내용은 불과 4시간 정도 불과해 예비 입양 부모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신생아 입양과 연장아 입양, 난임 가정의 입양과 유자녀가정의 입양 등 다양한 참여가정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세분화하고 심화한 교육 내용이 없어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입양 후

자녀 양육과 입양가정의 과제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표 3> 은비의 2차 예비 입양부모 교육내용(2015.12.5.)

교육 영역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일자 (시간)	강사명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 입양과정 및 절차 - 입양의 효과	시청각자료 강의	2015.12.5. (1.0)	A기관 사회복지사1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안내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부모경험 나누기 - 자녀양육방법(입양가족 주기 및 부모준비)	사례발표 강의	2015.12.5. (2.0)	입양모 A기관 원장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인 사례 나누기 - 아동심리 및 정서 - 입양아동의 심리, 정서	사례발표 강의	2015.12.5. (2.0)	입양인 입양인 A기관 원장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사후서비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입양가족모임소개	강의 시청각자료	2015.12.5. (1.0)	A기관 사회복지사1
기타	-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강의	2015.12.5. (0.6)	A기관 사회복지사2
	- 입양관련 영상물 시청	시청각자료	(0.4)	A기관 원장
	- 소그룹활동, Q&A	토의	(1.0)	A기관 입양상담부장
연장아 입양준비	- 연장입양아동의 발달 특성	부부상담 교육	2015.12.19.	A기관 원장

출처: A기관, 2016.

특히 은비 같은 연장아동은 만 1세 미만인 신생아보다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입양부모와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철저한 부모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 연장아동 사례에 관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초기 적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지지해줄 필요가 있지만, 현재 연장아 입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화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이나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A기관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예비 입양 부모교육의 공통내용에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표 7 참조).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제도인 '완전입양'은 가의 계승을 위해 입양하던 이전의 '단순입양' 혹은 '불완전 입양'과 효력이 다르다. 단순입양에서는 입양 이후 친부모와 혈연관계를 유지하고, 상속권도 보장하지만, '완전입양'에서는 생애 초기부터 입양부모의 가정에서 출생한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부여받고 법률적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진다. '완전입양'은 입양가정 내 아동 지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친생부모와 모든 혈연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므로 파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파양은 입양부모가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입양 후 아동의 입양가정 내 자녀 됨

의 권리를 보장받게 해야 한다. 완전입양과 파양은 아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위해서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이경은, 2017)임에도 교육내용에 파양의 요건과 절차를 포함하는 것은 입양부모에게 아동을 키우다가 정말 힘들면 파양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

2. 입양과정에서의 실천 현황과 문제점

1) 아동 결연과 입양 전제 가정위탁

아동 결연이란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예비 입양가정과 엄격한 절차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입양이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결연하는 일이다.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란 입양대상 아동이 법원 허가가 나기 이전 애착 형성과 안전한 적응을 위해 결연된 예비 입양가정에서 위탁의 형태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입양특례법 제31조 제1항[3]에서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비는 입양 허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1차 예비 입양가정에 가정 체험의 형태로 위탁(2015.7.24.~2015.11.27.)되었다가 귀원 조처되었고, 다시 2차 예비 입양가정에 가정체험의 형태로 위탁(2015.12.19.~2016.7.21.) 보내진 상태였다. 은비는 이미 아동학대로 뇌사 상태가 된 2016년 7월 22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2차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를 결정하였다.

법원의 허가 절차는 2011년에 전부 개정한 입양특례법을 2012년 8월부터 시행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입양은 법원에서 입양허가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완료된다. 입양허가심판은 일반 재판보다 간단하게 진행하지만,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후 허가 결정까지 3~6개월가량 걸리다 보니 예전보다 입양 절차가 길어지면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시사저널, 2016). 현재의 입양 전제 가정위탁 관행은 입양특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을 거스르며 시행하고 있다. 동 규정의 취지는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적절한 심판 절차를 거친 후 아동을 인도하자는 것이지만, 현행 입양 전제 가정위탁 관행에서는 입양기관장 단독의 결정으로 아동을 예비 입양가정에 인도할 수 있다. 현행 입양 전제 가정위탁 관행은 공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을 예비 입양 가정으로 인도함으로써 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게 한다.

---

3) 제31조(아동의 인도)

①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②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은비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중 하나는 '아이를 입양가정의 품으로 빨리 보낼수록 좋다'라는 생각이다. 아동과 결연할 입양가정을 적격한 가정조사와 교육을 통해 준비하였다면 바로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은비의 경우 첫 번째 입양 전제 위탁가정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입양 전제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다. 이는 분명 아동이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전문적인 실천이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잘못된 인식은 '이미 넷이나 입양해서 잘 키워 유학까지 보낸 훌륭한 부모'이므로 어떤 아이도 잘 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입양가정의 조사과정은 한 달 만에 끝났다. 모든 입양아동은 아동의 연령과 특성, 살아온 배경 등에 따라 다른 욕구를 가진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어리지만 이미 분리를 여러 번 경험한 은비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면서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입양기관은 은비의 2차 입양부모가 이미 훌륭한 입양부모로 칭송받고 있으므로 어떤 아동이든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고 연장아동에 대한 입양 동기와 양육 능력을 파악하는 철저한 가정조사와 아동의 욕구와 예견되는 양육 어려움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준비도 없이 은비를 맡겼다. 그 결과 은비는 물론 입양가정 구성원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비 입양가정에 혈연관계도 아닌 어린 남자아이를 은비와 함께 결연해서 보냄으로써 문제 발생의 소지를 가중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실천은 입양실천의 기본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비전문적 행태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받아 본 A기관 자료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쌍둥이를 원하는 입양부모에게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같은 해에 탄생한 두 아이를 함께 결연해서 보내는 등 입양부모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데 급급한 비전문적인 실천을 하였다. 이러한 입양부모 중심 실천은 아동뿐 아니라 입양가정에도 피해를 준다.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양육하면서 생애주기별로 겪을 다양한 이슈에 관한 사전 준비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양아동 양육과 관련해서 비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마련이다. 예비 입양가정조사와 부모교육은 바로 그러한 입양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욕구를 조정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을 하게 하거나 아예 입양을 사전에 포기하게 돕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입양동기와 기대로 발생할 입양아동과 가정의 피해를 예방하고, 입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양특례법 제24조에는 입양 알선이 곤란한 아동과 재입양 의뢰 아동의 보호에 관해 명시하면서 첫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는 아동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둘째,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할 동기가 있는 예비입양 부모 발굴과 전문적인 교육, 훈련, 슈퍼비전을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슈퍼비전을 맡을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공인된 자격이 있는 입양 관련 전문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이 모든 과정은 입양기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입양 후 실천 현황과 문제점

1) 사후서비스

우리나라 입양특례법 제25조[4]에서는 사후서비스를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 담당자가 입양부모와 입양자녀의 상호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가정에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에서는 국내입양인 사후관리가 입양 후 가정조사 보고서, 입양아동과 부모 교육, 입양아동·친생부모·입양부모 상담, 입양아동과 가족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기관에서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입양부모 자조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가 공개입양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국가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때마침 입양을 촉진하는 정부정책과 입양홍보 운동이 맞물리며 정부는 입양가정에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입양수수료 270만 원을 지원할 뿐 아니라 16세까지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과 18세까지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심리치료비를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입양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과 상담 등 전문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요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입양 부모는 전문적인 사후서비스뿐 아니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의 상향 조정, 입양부모를 위한 심리치료비, 의료급여 연장, 대학 학비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한다(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 2016). 선진외국에서도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 형제가 있는 아동 등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위탁·입양의 형태로 가정에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건강한 영아를 입양할 때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국가는 없다.

입양부모는 선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은 입양아동과 서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

4)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어려움이 있어도 입양부모가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입양부모는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선한 일을 한 특별한 사람으로서 아동을 잘 알아서 키울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다.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입양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나 인식 때문에 입양부모는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아이의 결함에서 찾고 아이의 치료에만 열중하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입양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부족으로 도움을 받을 자원이 부족하여 적절한 사후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아동의 파양이나 은비사건과 같은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 입양가족을 위한 사후관리는 현재 입양특례법상 규정된 사후관리와 위탁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후서비스 사업,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입양특례법상 규정된 사후 1년간의 관리는 입양 후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발달상황과 적응상황, 어려움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입양가정과 아동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려움이 있으면 이후 사후서비스 사업이나 별도 사례관리 등으로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변미희·안재진·신혜령, 2016).

현재 우리나라 입양실천에서는 사후서비스 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해마다 중앙입양원이 위탁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분배해 진행하는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을 입양기관이나 입양 사후서비스기관, 입양 자조모임 등이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형편이다. 2016년 국내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입양가족 심리·정서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입양가족 교육, 입양가족 행사나 모임 지원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내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후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정보체계가 부재하여 입양가족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되어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주로 서울·경기권에 위치한 기관을 중심으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 입양가정 소수에게 서비스가 편중되기도 하고, 지방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입양가정은 정보가 없고 거리가 멀어 사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공식적인 체계가 없고 지리적 제약이 많다 보니 국내 입양가정은 온라인 카페나 가까운 지역 모임에 의지하여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지받는 것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역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주로 입양 경험을 가진 선배가정이지만, 전문지식과 자원을 가진 전문가는 아니기에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변미희 외, 2016).

현재 입양절차는 크게 민법의 규정에 따른 ‘민간입양’과 입양특례법에 따른 ‘기관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에서 입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6세 입양아의 사망사건은 ‘민간입양’으로, 우리나라 ‘민간입양’ 절차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숨진

아동의 입양부는 사기와 폭력 등 전과 10범이 넘는 위험인물이었지만 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며 예비입양 부모 교육도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민간입양'에서는 입양 후 아동의 안전과 적응을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부모의 자격조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민간입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정책신문, 2017).

4. 입양기관 실무자 실천 현황과 문제점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입양은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영구대리 보호서비스'로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아동보호 서비스이다. 입양은 법원허가를 얻는 순간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가족의 발달주기에 따라 평생에 걸쳐 다양한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며 완성되어 간다. 그러므로 입양실천을 하는 실무자는 입양삼자인 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뿐 아니라 이들 삼자가 겪는 문제와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 실무자의 자격과 역량은 성공적인 입양과 직결되는 요건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입양사업은 대부분 입양 알선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입양실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양사업의 대상은 입양아동뿐 아니라 입양부모와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이들 삼자의 욕구와 이해는 서로 상충할 수도 있으므로 입양 실무자는 그것을 각각 존중하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며,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입양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평생에 걸쳐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입양실천은 아동은 물론 친생부모와 입양부모 평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고도의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박인선, 1995). 그러나 우리나라 입양 실무자의 자격 기준은 매우 허술하다.

1) 입양기관 실무자 자격

우리나라 입양기관 종사자의 기준은 ⑴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⑵ 대학을 졸업하고 입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⑶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1). 기관 종사자 교육의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개시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다(입양특례법 제2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더

라도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입양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입양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국내입양기관 실무자의 학력을 보면 약 33%가 대학원 졸업 이상, 나머지는 대학 졸업으로 나타났고, 전공분야는 85%가 사회복지, 15%가 사회복지를 상담과 함께 복수전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변미희 외, 2016). 하지만 현재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에서 입양실천에 관해 배울 과목이 거의 없으며, 아동복지론 등의 교과목에 일부 있다 해도 학생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에 관해 특화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입양기관 실무자가 될 수 있고, 입양실천 업무를 할 수 있다.

A기관의 경우 신입 실무자들은 입사 이후 입양 실무나 입양이슈에 관해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모든 것을 혼자 익혀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상조사위원회, 2017). 이렇게 입양 실무나 입양이슈에 관한 기초 지식조차 없는 실무자가 예비 입양부모를 제대로 교육하고, 입양 준비를 돕고, 입양부모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의 사례에 기관 종사자 여러 명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A기관의 실천은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양업무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천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A기관 내 전체 사례회의는 월 2회 이루어졌으며, 동 사례회의에서는 기관에서 보호 중인 모든 아동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 공유하였다고 한다. 아동별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회의는 부재하였고, 원장이 입양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었다. 별도의 자문회의나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에 집단적인 검토와 자문, 모니터링할 체계가 부재했다(진상조사위원회, 2017).

2) 입양기관 실무자 보수교육

우리나라 국내입양기관 종사자는 실무자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7)의 입양실무매뉴얼에서는 입양실무자 보수교육 내용을 ⑴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⑵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⑶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⑷ 입양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⑸ 입양 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⑹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입양기관장은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 실무자와 일반 실무자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동일하지만 내용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교육내용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우리나라 입양기관 실무자 보수교육 내용

과정	기관장 과정 (1일 4시간)	입양 정책과 향후 방향(보건복지부 사무관) 토론 및 간담회: 입양 정보 공개와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교수)	
	종사자 과정 (1일 8시간)	신규 실무자	아동의 권익(한국인권재단) 아동의 적응과 지역자원 연계(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실무(홀트아동복지회) 입양 법적 절차(동방사회복지회) 입양기록보존과 사후서비스(중앙입양원)
		실무자	아동의 권익보호(한국인권재단) 아동의 적응과 지역자원 연계(홀트아동복지회) 상담기법 활용(이야기치료, 해결중심 상담, 인지행동 중 선택) 입양기록 보존 및 사후서비스(중앙입양원)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보수교육의 목적은 입양기관 종사자가 입양사업 대상자를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 데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입양기관 종사자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업무 착수를 위한 준비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볼 때 보수교육의 내용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나 보수교육 내용 대부분이 입양 삼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좀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보다는 아동의 권익과 같은 광범위한 내용을 한국인권재단에 맡겨서 한다든지, 입양의 법적 절차, 입양기록보존 등과 같은 행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양실천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양실무자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상담역량을 강화하는 슈퍼비전과 교육과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상담기법을 소개하는 1-2시간의 교육과정을 보수교육에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나아가 보수교육의 절반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할 입양기관 관리자가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양실천의 전문성이 세워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는 입양실무자 보수교육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에서 입양기관 실무자 23명 중 12명(52.2%)가 예비입양 부모를 조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연장아동 입양과 입양 아동 심리 발달, 입양 가족 지원 등을 포함한 더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이숙정·유지현·민성혜·신혜원, 2016).

Ⅱ. 우리나라 입양실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입양 실천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려면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입양실천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선행연구와 외국의 경험,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양 전 실천 개선방안

1) 가정조사: 예비 입양 부모 평가와 준비과정

우리나라 입양실천이 좀 더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아동의 원가족 보호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숙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 없이 아동을 원가족에서 쉽게 분리하여 입양으로 대안 가정을 찾아주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배제하는 실천이 될 수 있다.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대안임이 분명해지면 아동과 결연할 예비 입양 부모의 가정조사와 교육을 내실 있고 깊이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가정조사는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할 가정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가정조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조사 과정을 표준화하고,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자격 있는 실무자를 교육·훈련하여 예비 입양부모의 교육과 준비, 양육능력 평가가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가정조사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첫 단계로 입양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준비와 교육, 지지가 미흡할수록 입양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cRoy, 1999; Nelson, 1985; Smith, Howard, Garnier & Ryan, 2006,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2: 4 재인용). 또한,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도 입양의 실패 요인이었다(Barth & Berry, 1988; McRoy, 1999,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2: 4 재인용). 가정조사는 예비 입양부모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할 뿐 아니라 입양아동을 키우면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정조사를 진행하려면 구체적인 지침과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증진하여야 한다.

가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입양 아동의 욕구에 가장 잘 맞는 가족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즉, 입양아동 양육의 특수성에 관하여 입양가족을 교육·준비시키고, 예비 입양부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합한 입양아동과 결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 입양가족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정조사 과정에 공통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

<표 5> 가정조사 항목

오리엔테이션	초기 정보제공을 위한 세션으로 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입양절차를 소개한다.
교육/훈련	예비 입양부모는 본격적인 가정조사 과정을 시작하기 전이나 과정 중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가족을 기다리는 아동의 욕구와 입양이슈,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자신들이 어떤 아동을 가장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결정하게 돕는다.
면접	실무자는 가정조사 과정에서 예비 입양부모를 여러 번 면접하면서 가족을 이해해 나가고 입양가족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면접은 예비 입양부모 둘 다 함께 만나는 경우도 있고, 따로 만나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예비 입양부모의 ① 가족 배경, ② 교육/직업, ③ 부부관계, ④ 일상생활, ⑤ 양육경험, ⑥ 이웃과 지역사회, ⑦ 종교/가치관, ⑧ 입양에 대한 느낌과 준비된 정도, ⑨ 지지체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면접은 예비입양부모가 상실과 애도, 신뢰와 애착, 아동기에 경험한 정신적 충격, 생애주기별 발달단계, 가족의 역동성 등 입양경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를 배우고 자신을 성찰할 시간과 과정이 된다. 예비 입양가정에 이미 아이들이 있을 때는 입양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등을 묻는 면접도 한다.
가정방문	장차 입양아동이 살게 될 곳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이 잘 곳은 물론 아동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이나 장소는 없는지 살피고, 집 전체와 이웃 환경 등을 살핀다.
건강 진단서	예비 입양부모는 담당 의사로부터 자신들이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고,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될지를 예상하는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수입과 건강보험에 관한 증명	가정의 재정을 적절하고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입양아동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범죄와 아동학대 기록 확인	범죄와 아동학대 기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서전과 같은 자기 이야기	예비 입양 부모는 자서전과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예비 입양부모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가정조사서를 서술하는 데는 물론 예비 입양부모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이슈를 성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입양기관 대부분은 질문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자서전을 서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추천서	수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으로 예비 입양부모를 다양한 상황에서 본 경험이 있고, 집에도 방문했었고, 예비 입양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이들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 3~4명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예비 입양가족의 친척은 추천인이 될 수 없고, 주로 친한 친구, 이웃이나 교회 지인 등이 된다. 추천서는 추천인이 실무자에게 직접 보내게 하는데 이는 예비 입양가족과 그들의 지지체계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입양실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에도 양친가정조사서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양친가정조사서는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동기와 성장배경, 가족 상황 등을 면접하고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에 제시하는 가정조사매뉴얼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어느 범위나 깊이까지 다루어야 하는지 상세한 방법에 대한 지침

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의 상담과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조사서는 입양기관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각 실무자의 입양실천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따라 그 내용에 편차가 매우 크게 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가정조사서에 포함할 주요내용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항목별로 필요한 조사내용을 세분화하고 있다.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질문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고,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탐침질문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관한 지침을 자세하게 마련하여 입양사례별 가정조사서를 어느 정도 표준화하고 있다(이숙정 외, 2016).

최근 미국 22개 주와 캐나다 5개 주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가정조사 과정을 구체화하고 타당화하기 위해 고안·개발한 '가족에 대한 구조화된 분석평가(SAFE: Structured Analysis Family Evaluation, 이하 SAFE)'의 활용을 의무화하였다. SAFE는 1999년 미국에서 공공과 민간 아동복지기관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아동협회(Consortium for Children)가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의 가정조사를 위해 개발한 방법이다.

기존 가정조사서는 자서전과 같이 예비 입양부모의 자기보고식 도구를 활용하면서 입양에 필요한 핵심 내용과 무관한 내용에 관해 읽거나 이야기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한계가 있다. SAFE는 구조화되어 있어 단계별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질문지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입양부모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이슈에 집중하게 한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예비 입양부모의 강점과 이슈를 평가하는 도형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지원자의 양육능력과 기능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에만 집중하게 된다. 예비 입양부모의 강점이 입양아동 양육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도 초점을 맞추게 한다. 가정조사서는 아동 배치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 예비 입양부모의 강점과 염려되는 부분뿐 아니라 어떤 아동을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를 상세하고도 솔직하게 보여주는 예리한 분석결과이어야 한다. 그러한 분석 없이는 예비 입양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동을 배치할 수 있는데, 이는 종종 아동학대나 재배치로 이어진다. 따라서 가정조사를 잘하는 것은 아동과 예비 입양부모를 모두 보호하는 길이다(Consortium for Children 홈페이지, 2017). 대구 입양가정 학대 사건도 가정조사 과정이 철저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예비 입양가정조사 보고서는 한 사람의 자격 있는 실무자가 담당하되 철저한 점검 절차를 통해 완성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가정조사는 한 사람의 자격 있는 실무자가 전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한 예비 입양가정을 여러 사회복지사가 준비시키거나, 한 사례를 여러 사회복지사가 담당할 때도 입양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estinger, 1990; McRoy, 1999,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2: 4 재인용.) 한 예비 입양가정의 조사에 여러 다른 실무자가 관여할 때는 입양가족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입양아동을 배치한 후에도 가족을 적절히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A기관처럼 여러 명의 실무자가 한 가정을 단계별로 분절된 상태에서 만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예비 입양 가정이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일은 예비 입양아동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므로 기관 실무자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한 단계 이상의 철저한 점검절차를 통해 승인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민간기관이 입양사업을 진행할 때 기관의 이익이 관여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과 독립된 기구가 예비 입양부모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입양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국의 입양실천 과정을 보면 예비 입양부모의 가정조사 과정이 몇 단계를 거쳐 얼마나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영국의 입양실천은 지방당국(local authorities) 산하 공공 입양기관에서 담당하는 데 가정조사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한다. 사정 전 절차(Pre-Assessment Process)와 결정단계(Pre-Assessment Decision)를 포함하는 제1단계는 입양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기초 교육과 준비단계이다. 이 단계는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관심과 양육능력을 탐색하고 건강문제, 범죄기록 등에 대한 검토와 추천인의 면접을 통해 제2단계로 진행해도 될지를 판단하는데, 총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예비 입양부모도 입양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양육능력을 알아가고 판단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계속해서 입양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하게 돕는다. 제1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예비 입양부모가 6개월 이내에 제2단계를 시작하지 않으면 제1단계를 되풀이해야 한다. 집중적인 교육과 사정(Assessment Process)을 하는 제2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는 예비 입양부모에게 사정절차와 예상 기간(4개월), 교육에 관한 사항, 입양 승인결정 절차, 입양패널(Adoption Panel)의 역할, 독립재검토절차(Independent Review Mechanism) 등 제2단계의 진행방법과 예비 입양부모의 의무이행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이에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과정은 입양부모가 엄격한 입양절차의 필요성을 사전에 이해하고 협조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제1단계와 제2단계는 보통 한 사람의 자격 있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같은 사람이 가족이 입양하기에 적격한지, 적격하다면 어떤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격한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진행한 경우 보고서에는 담당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슈퍼바이저도 서명한다. 보고서를 입양기관과 독립된 다학문적 배경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양패널[5]에 제출하면 예비 입

5) 입양패널은 입양기관과 독립된 다학문적 기구로서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입양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패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권위와 능력, 복합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설명할 능력, 중요한 이슈와 문제 해결방법을 찾는 능력, 탁월한 대인관계 능력, 말과 글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입양패널은 기관 결정권자가 1. 아동의 입양적격 여부, 2. 예비 입양가정의 적격여부와 예비 입양가정 승인의 철회, 3. 아동을 특정 예비 입양가정에 입양 보내야

양가정에 아동을 배치해도 될지를 기관 결정권자(Agency Decision-Maker)[6]에게 권고안을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기관 결정권자가 내린다. 아울러 입양기관이 예비 입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는 독립재검증절차 (Independent Review Mechanism)를 진행하는데, 이 패널 역시 기관과 독립된 사람으로 구성해서 진행한다. 법원은 기관 결정권자가 사례에 관해 결정할 때 (1) 자신의 법적 권한, (2) 입양패널에 제출한 보고서를 포함해서 사례와 관련된 모든 정보, (3) 입양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보고서 준비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지켰는지, (4) 예비 입양부모 관계의 안정성과 영구성, (5) 입양패널과 독립재검증패널의 권고와 이유, (6) 입양패널과 독립재검증패널의 마지막 회의록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개선 필요사항

○ 가정조사 과정을 표준화하고,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자격 있는 실무자를 교육·훈련하여 예비 입양부모의 교육과 준비, 양육능력 평가가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 예비 입양가정조사 보고서는 한 사람의 자격 있는 실무자가 담당하되 철저한 점검 절차를 통해 완성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2) 예비 입양부모 교육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잘 준비된 입양가정을 찾아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입양아동은 분리와 상실의 경험을 하는데, 특히 많은 분리와 상처를 경험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예비 입양부모는 입양의 의미는 물론 입양아동의 욕구에 대한 지식과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가정조사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 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입양의 다양한 이슈와 어려움을 깊이 있게 성찰·이해하고, 입양이 자신과 가정에 꼭 필요한 일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정서적으로 준비하게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예비 입양부모 교육이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을 아동의 욕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우려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하는지에 관해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6) 기관 결정권자는 법으로 명시된 자격과 지식, 경험을 소지한 기관의 선임자로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없지만, 기관을 대신해서 위 3가지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입양기관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한 명 이상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입양에서는 입양 삼자(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부모의 자격 완화, 입양가정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입양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아동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은 입양부모의 위치를 시혜자로 강화한다. 이는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도 많고, 자녀를 원하는 입양부모도 많지만, 입양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 입양이 성사됐다 하더라도, 입양부모는 자신을 시혜자로 여기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박인선, 1995). 이렇게 입양부모의 욕구 충족에 초점이 맞춰진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 원칙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구 사건도 철저한 예비 입양부모 교육과 가정조사를 통해 입양부모가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분리경험과 정서적 충격을 경험한 은비가 당연히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행동을 예비 입양부모가 예상하고 대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방법을 모색하게 돕거나 아예 입양을 포기하게 했더라면 은비도, 입양부모와 가정도 지금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런 입양부모와 기관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입양이 초래하는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부모가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얻고, 정서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예비 입양부모가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가정조사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앞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입양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족과 아동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입양아동이 각자의 발달 배경에 따라 어떤 욕구가 있고, 생애주기별로 어떤 이슈를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이해를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는 입양가정이 당면할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그러한 문제에 얼마나 잘 대처할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매우 짧은 8시간 동안만 이루어지는 데도 입양절차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진행하는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예비 입양부모가 과연 입양이 자신들이 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인지를 숙고하고 성찰할 기회를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특히 '완전입양'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파양(이경은, 2017)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전국적으로 입양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초점을 맞춘 통일된 고품질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입양당국(The Swedish Intercountry Adoption Authority: the MIA)과 국가보건복지위원회(Sweden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가 함께 예비 입양부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자격을 갖춘 교육자를 훈련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교육은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취약점을 이해하고, 입양아동을 양육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예비 입양부모가 자신의 입양 동기와 입양과 관련해 고려할 윤리적 이슈와 개인적 이슈를 성찰하게 돕는다. 예비 입양부모는 특별히 애착관계와 삶의 연속성, 정체성, 상실에 따른 애도, 정신적 충격, 신체적·정서적 손상과 장애 등과 관련된 입양아동의 일반적, 특수한 욕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것은 입양부모가 실제로 얼마나 교육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했는지와는 무관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 사회복지사는 예비 입양부모가 교육 과정에서 다룬 주제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가정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한다. 이는 예비 입양부모가 교육과정을 통해 새롭게 하게 된 생각이나 질문을 검토하고, 어떤 영역에서 지식과 이해를 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어떤 영역에서 좀 더 정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셋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공적 기관에서 예비 입양부모가 아동중심으로 입양하게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통일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훈련된 교육자가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입양기관이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직접 설계하여 진행한다. 그 내용과 절차를 보면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의 의미를 성찰하고, 입양 이슈와 아동의 욕구를 이해하고, 입양이 자신들 가정에 적합한 일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돕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입양을 결정하게 돕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A기관에서 은비의 2차 예비 입양부모가 참석한 교육에서는 입양모와 입양인이 진행한 강의를 제외한 모든 강의는 기관 원장이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였다. 민간기관의 경우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결정은 기관 이익과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기관은 예비 입양부모 교육에 입양의 장단점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여러모로 숙고하게 돕고 입양이 예비 입양부모에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결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은 기관 이익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당연히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예비 입양부모는 입양을 그저 좋은 일, 행복한 일, 선한 일로 여기면서 쉽게 결정하게 되고, 입양아동을 키우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예상도,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면 과도하게 당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미 4명의 입양아동을 성공적으로 양육한 훌륭한 입양부모라는 사회적 인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은비의 입양부모에게도 자신들의 입양

동기에 대한 성찰이나 은비의 특수한 욕구를 이해하고 준비할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여러 이유로 은비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동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지 못하여 결국 아동의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된 비극을 초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부실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아동과 입양부모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처럼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철저한 연구를 통해 예비 입양부모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고, 강사도 엄격한 자격 검증을 통해 선발하고 훈련하여 예비 입양부모가 진정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입양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넷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입양대상 아동과 불임·난임 가정, 유자녀 가정 등 예비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좀 더 특수한 내용을 담아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예비 입양부모 교육에는 공통으로 포함할 내용이 많다. 하지만, 입양이 입양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연장아동 입양은 입양부모에게 신생아 입양과는 다른 기쁨과 도전을 안겨준다. 연장아동이 입양 전 누구와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입양 후 적응과 행동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장아동을 입양하려는 예비 입양부모는 자신들이 아동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아동이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의 중요성, 연장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당면한 과제, 기존 입양가정에 연장아동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방법, 아동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입양아동이 변화에 좀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Adoption Learning Partners 홈페이지, 2017).

예비 입양가정 중 유자녀 가족과 난임·불임 가족의 입양 동기가 다르고, 입양과 관련해서 성찰해야 할 과제가 다를 수 있다. 특히 난임·불임 예비 입양부모는 자존감의 손상, 개인과 가족의 유전적 지속성에 대한 상실, 부부가 함께 잉태한 아동에 대한 상실, 임신과 출산, 수유로부터 오는 신체적 만족감의 상실, 친생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의 상실, 인생의 통제력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다(Johnston, 1984).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는 적절한 애도 과정을 통해 난임·불임을 수용해야만 입양할 준비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양아동은 늘 차선책이 되거나 자신들이 낳지 못한 '이상적인 아동'을 대체할 완벽한 아동이 되어야 하고, 아동이 보이는 모든 문제는 '나쁜 혈통 탓'으로 돌려질 수 있다(Schwam & Tuskan, 1979, Berman & Bufferd, 1986). 이런 이유에서 선진외국의 입양기관에서는 난임·불임 예비 입양부모가 출산 시도를 중단하고 1년 이상이 지나야만 입양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난임·불임에서 비롯한 상실의 경험을 해결하고, 입양을 출산보다 열등하지 않은,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곤

한다.

은비 사건의 경우에도 2차 예비 입양가족이 연장아동 입양을 이해하고 좀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세분되고 심화한 맞춤형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양전문교육기관인 Adoption Learning Partners(ALP)은 온라인으로 다양한 입양관련 교육을 제공해 준다. 입양기관 중에는 필요에 따라 예비 입양부모에게 연장아동 입양 등에 관해서 이곳에서 추가로 교육받게 하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가정조사 과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이미 입양한 부모, 입양전문가 등 입양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을 지원해 준다. 교육과정은 입양아동의 정체성 확립, 연장아동 입양, 입양아동의 상실과 애도, 애착관계, 입양 후 학령기 아동을 위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최고 옹호자 되어주기, 입양아동과 훈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2시간짜리 과정이다(Adoption Learning Partners 홈페이지, 2017). 다음은 Adoption Learning Partners에서 제공하는 연장아 입양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

<표 6> 연장아 입양 교육

구 분	내 용
연장아 입양에 대한 예상과 기대 고려하기	• 입양아동 역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 입양아동을 가정 안으로 통합시키는 전략을 개발하기 • 연장 입양아동의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 자신과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이해하기
연장 아동 입양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	• 몇 시에 아이가 잠들고 목욕하고 일어나는지 • 아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 • 아이가 앓았던 병이 있는지 •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 아이가 밥 먹는 시간은 언제이고 어떠했는지 • 아이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지 • 아이가 화났을 때 어떻게 해야 편안해지는지 •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 아이가 아프거나 피곤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이의 성장배경	• 의료적, 발달적, 심리적 건강에 대한 정보 •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배경 • 배치에 관련된 이력 • 교육 배경
연장 아동이 낯설어 하는 것들	• 아이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지만, 가족이 먹던 음식들을 아이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아이는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이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잠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편안하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 아이가 낯선 환경에 압도당할 수 있으므로 아이 방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꾸미고, 너무 많은 사진과 그림, 장난감은 피한다.
아이가 처음 가족이 된 1주일	• 특별한 날처럼 지내지 않는다. • 너무 많은 외출과 관광을 하지 않는다. • 큰 파티를 열지 않는다.

	• 방문자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 일과를 정하고 그래도 따른다. • 필요에 따라 가족의 규칙을 이행한다.
아이의 일상을 구조화하기	• 식사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준다.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 메뉴 선택을 단순하게 한다. • 낮잠과 잠자리: 낮잠과 잠자리는 모두 매일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잠자리 들기 전 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은 아이를 편안하게 해준다. 잠들기 전에 목욕하고 이야기를 해 주면 아이가 매일 저녁 무엇을 예상해도 좋을지 알게 해준다. • 숙제: 매일 같은 시간에 숙제할 수 있도록 아이를 격려한다. 숙제하고 책을 놓을 특별한 장소를 제공한다. • 바깥놀이: 친척 집 방문이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등 특별한 외출을 계획할 때는 아이가 미리 알도록 한다.
아이의 섭식 문제 해결하기	• 과거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겪어본 아이들은 자주 음식과 관련해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갖곤 한다. 그들은 음식을 비축해 놓거나, 폭식하거나, 한두 가지 음식만 먹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라도 모조리 먹어버리기도 한다. 부모는 가끔 이런 문제를 통제력의 이슈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양과 건강을 생각해서 강제로 먹게 하려는 '옳은 일'을 감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 음식은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아이는 당신을 음식의 원천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음식을 통해서 얻는 위로를 당신에게서 받는 위로로 이전할 것이다. 손으로 먹여주는 것, 식사시간을 재미나는 음식으로 흥겹게 하는 것, 같이 요리하는 것은 모두 부모를 위로와 음식과 연결하게 돕는다. 그러려면 음식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이 음식을 만들거나 거실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색이 예쁘고 이쁜 접시를 사서 식사시간에 사용하거나, 서로 먹여주거나, 그냥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만을 준비하거나 같이 외식을 하면서 음식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준다.

출처: Adoption Learning Partners 홈페이지, 2017

개선 필요사항

○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부모가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얻고, 정서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야 하고, 예비 입양부모가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가정조사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공적 기관에서 예비 입양부모가 아동중심으로 입양하게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통일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훈련된 교육자가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입양대상 아동과 불임·난임 가정, 유자녀 가정 등 예비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좀 더 특수한 내용을 담아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입양과정에서의 실천 개선방안

1) 아동 결연과 입양 전제 가정위탁

아동 결연이란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예비 입양가정과 입양대상 아동을 결연하는 일이다.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란 입양대상 아동이 법원 허가가 나기 이전에 애착 형성과 적응을 위해 결연된 입양가정에서 위탁의 형태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입양 전제 가정위탁 관행에서는 공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기관장 단독으로 아동을 예비 입양가정에 인도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도 예비 입양가정이 아동을 공식적으로 입양하기 전 위탁가정의 형태로 시범 양육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철저히 아동중심으로 예비 입양가정이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 은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 예비 입양가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 없이 예비 입양부모 입장에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입양대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동을 위험에 놓이게 한다. 이에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째, 입양 전제 가정위탁은 엄격한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교육을 통해 예비 입양가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법원 허가는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받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양 전제 가정위탁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곳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적절한 아동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외국에서처럼 입양부모의 철저한 가정조사와 교육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으로 동시에 승인받고 난 후에만 입양 전제 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을 배치한 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의 적응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 입양가정이 아동을 잘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입양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에서도 예비 입양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동시에 승인하여 입양될 가능성이 보이는 아동을 위탁·입양 가정에 배치한 후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친권박탈이 이루어지면 입양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하지만, 입양승인을 받은 모든 예비 입양가정에도 법원 허가가 나기 전에 아동을 배치한 후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입양부모

에게 아동양육과 관련해 조언하고 지지해 주고, 법원에 제출할 입양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아동을 입양가정에 배치한 후 처음 몇 주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므로 첫 방문은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늦어도 4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첫 심사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입양승인이 나기까지 얼마나 자주 방문할 것인지는 배치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하고, 입양 배치 계획에 기록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스웨덴에서도 예비 입양가정은 아동이 배치되고 입양 승인이 나기까지는 위탁가정으로 간주한다. 특히 초기 적응이 가장 어렵고 중요함으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의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을 관찰, 지도·감독하고, 가족을 지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자주 가정을 방문할지는 예비 입양부모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승인을 위해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지방정부 사회복지위원회는 법원에 입양가정과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미국에서는 예비 입양가정에 아동을 배치한 후 입양 승인을 하기까지 보통 6개월 동안 아동과 가족이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 기간에 담당 사회복지사는 예비 입양가족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면 법원에 입양승인을 위한 법정심리를 신청한다. 먼저 아동이 법적으로 입양 가능하고, 아동의 후견권을 가진 기관이 동의하는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면 판사는 법정심리에서 아동과 가정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입양을 승인할 수 있다(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 Permanency Network 홈페이지, 2017).

둘째, 아동의 결연은 아동의 평생이 걸린 중요한 결정이므로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입양가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 등록체계와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결연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동에게 어떤 가정을 결연할지를 결정할 때는 예비 입양가정이 아동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할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동과 예비 입양부모의 결연은 아동과 예비 입양부모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로서 고도의 전문능력이 필요한 과업이다. 결연할 때는 예비 입양부모가 아동이 현재 보이는 욕구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 예비 입양부모의 양육능력, 기관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 지연의 방지 등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결연에 대한 접근은 기존 연구결과와 실천경험에서 효과적인 실천이라고 밝혀진 것을 토대로 할 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입양대상 아동에게 더 적합한 가정이 다른 입양기관에 있을 수 있으므로 '입양과 아동법 등록체계(The Adoption and Children Act Register)'을 통해 입양기관 간에 입양아동과 예비 입양가정에 관한 정

보를 공유해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결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공공 입양기관의 결정권자는 아동이 입양에 적격하다고 판단한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예비 입양부모도 결연할 아동 정해져 있지 않은 한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사업을 모두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므로 입양기관 간에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각 기관이 접수한 입양대상 아동과 입양을 신청한 가정 안에서 결연하려다 보니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예비 입양가정을 찾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A기관처럼 기관장이 단독으로 결연을 결정하는 일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이루어진다. 반면 영국에서는 법원에 가기 전에 아동의 결연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기관 결정권자도 입양패널의 의견을 들을 뿐 아니라 지정된 기관자문관(agency adviser)와 의료자문관(medical adviser)로부터 조언을 구할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입양가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 등록체계와 좀 더 객관적인 결연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선 필요사항

○ 입양 전제 가정위탁은 엄격한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교육을 통해 예비 입양가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법원 허가는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받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동의 결연은 아동의 평생이 걸린 중요한 결정이므로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입양가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 등록체계와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결연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 하는 결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입양 후 실천 개선방안

1) 사후서비스

입양가정이 법원허가를 받고 입양을 완료했다고 해서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서비스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입양부모는 종종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입양아동도 성장하면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므로 입양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잘 성장하게 상담서비스와 지지,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는 사후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우리나라 입양가정 사후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로 발전하려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째, 사후서비스는 입양과 동시에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입양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담당 전문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후서비스는 매년 중앙입양원이 위탁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분배해 입양기관이나 입양 사후서비스기관, 입양 자조모임 등이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모두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기관마다 서비스 질의 격차가 심하다. 입양가정과 아동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이슈에 직면할 수 있고, 가정과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다. 따라서 사후서비스는 모든 입양가정이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연장아동과 같이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과 동시에 사후서비스에 대한 입양가정과 아동의 욕구사정을 수행해 입양가정이 처음부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입양 사후서비스는 상담, 자문, 정보제공, 치료서비스, 재정지원, 입양관련 대화를 하게 돕는 서비스, 입양관계의 지속을 돕는 서비스, 친생부모와의 만남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영국에서는 또한 모든 지방정부가 사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양 지원서비스 자문관(Adoption Support Services Adviser)을 지정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역할은 ⑴ 입양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자문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⑵ 지방정부의 다른 직원에게 입양지원서비스와 사후서비스에 대한 욕구사정, 서비스 접근성, 바람직한 실천방법, 서비스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 기관 내/기관 간 공동작업의 지원·촉진과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지원하고, ⑶ 다른 지방정부 관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지원(예: 입양가족이 이사할 때 서비스 지원도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양지원서비스를 2개의 지방정부에서 공동으로 제공할 때 협력하고 연계하는 역할)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같은 지역에서 입양아동의 교육을 위해 옹호해야 하는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야 할 때 촉진자 역할을 하고, 포괄적인 입양지원 서비스 전달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미국의 경우 '펜실베이니아주 입양과 영구계획 네트워크(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and Permanency Network: SWAN)'는 휴먼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과 펜실베이니아 입양거래소(Pennsylsania Adoption Exchange), 공공과 민간 입양기관과 조직, 권리 옹호자(advocates), 판사, 법조계,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이 파트너쉽을 맺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주에 사는 입양가정과 아동이 일생에 걸쳐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SWAN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는 입양가정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SWAN Helpline

이라는 전화 상담서비스도 운영한다. SWAN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표 7>과 같다.

<표 7> 입양 사후서비스

사례옹호 정보서비스 (Case Advocacy Service Information)	기관은 입양가정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직접 돕거나 정보를 제공한다. 가족의 강점과 욕구를 발견하게 돕고, 가족지원 계획을 세우고, 가족욕구를 충족할 서비스를 조정하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SWAN Helpline를 이용하는 입양가정에는 담당 직원이 질문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 서비스를 받는 절차를 설명해 주고,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을 때 해당 기관에 의뢰하면 사정절차를 시작한다.
지원 서비스 (Support Services)	입양가정도 모든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의사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치료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입양부모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기관에서는 입양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단체나 모임의 목록과 연락처를 제공한다. 지원서비스는 다시 ① 지지집단(Suppport Group), ② 뿌리찾기와 친생가족상봉(Search and Reunion)과 ③ 자원센터(Resource Center)로 구분한다. ① 지지집단은 입양가족과 아동에게 관계를 맺게 돕고, 서로 멘토가 되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교육과 사회적 교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지집단은 다른 사람과 입양의 성공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기관은 지역마다 입양가정과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지집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많은 입양인에게는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를 찾는 것이 의료적 이유나 개인적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 많은 친생부모도 점점 더 자신이 입양 보낸 친생자녀를 만나거나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데 이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뿌리찾기와 친생가족 상봉'이라고 한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를 찾거나 친생부모와 상봉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기관은 뿌리찾기나 친생가족 상봉을 원하는 사람에게 SWAN Warmline이라는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SWAN에서는 또한 입양이슈에 관한 책과 잡지, 비디오 등을 지역 도서관에 배포하고, 도서관 명단을 만들어 입양가정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휴식정보 서비스 (Respite Service Information)	휴식은 입양부모가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하여 아동을 더 잘 보살필 수 있게 한다. 휴식은 입양가정의 집 안에서나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휴식서비스는 특수 욕구가 있는 아동의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자원을 개발하여 해당 가족을 지원한다. 이는 입양가정과 아동 모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호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자원을 활용하는 데 집중한다. 전화서비스를 통해 입양가정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기관에 의뢰해서 사정절차를 시작한다.

출처: 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and Permanency Network 홈페이지, 2017

그 밖에 미국의 주요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특수욕구 입양아동을 위한 재정지원, 아동발달 단계별 적응을 위한 입양가족 지원, 생애에 관한 책(Life story book) 만들기, 안정적인 배치를 위한 지원, 가족역량 강화와 지지를 통한 아동의 안전 유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치료의 소개와 연계, 파양을 방지하고 입양의 완료를 돕기, 사후서비스 욕구 조사, 친생부모와의 관계 지속하기, 위기상황에 처한 입양가족 지원, 인종과 문화가 다른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족 지원, 사후입양서비스 프로그램의 평가, 사후입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

둘째, 입양은 선한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전 생애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전국에 분포한 입양가족이 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입양부모는 선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인식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만든다. 훌륭한 사람이 입양했으니 알아서 잘 키울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입양가정을 위한 사후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였다. 입양가정이 생애발달 과제를 인식하고 현금이나 현물보다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사후서비스로 재정지원을 할 때는 아동의 가정에서 영구적으로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만 자산조사를 통해 자격이 되는 가정에만 지원하고 정기적인 사정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또한, 위탁가정이 입양가정으로 전환하는 데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특수한 사례로 지정되지 않는 한 2년간만 지원한다. 또한, 재정지원이 입양부모에 대한 단순한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미국에서도 재정지원은 장애아동이나 연장아동과 같이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만 주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전문적인 사후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나 오히려 재정지원은 대부분 건강한 신생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고 있어 위탁과 입양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은비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에 대한 예비 입양부모의 준비가 매우 부족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입양가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후서비스를 하루빨리 개발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처럼 전화상담서비스를 구축하여 입양가족이면 누구라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전국에 분포해 있는 입양가정의 사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면 공적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 사후서비스는 입양과 동시에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입양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담당 전문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 입양은 선한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전 생애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전국에 분포한 입양가족이 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 입양기관 실무자를 위한 실천 개선방안

1) 입양기관 실무자 자격과 보수교육

앞서도 언급했듯이 입양사업은 입양 삼자 즉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분야이다. 입양 실무자는 입양 삼자의 욕구를 깊이 이해하고 각각 존중하면서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게 실천해야 하므로 매우 수준 높은 전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입양실천의 질이 향상하려면 입양기관 실무자의 전문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 입양기관 실무자 자격과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째, 입양실천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관의 입양실천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입양기관 실무자의 현재 자격기준은 매우 미흡하여 입양실무에 대한 이해나 경험 없이도 입양기관 실무자가 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은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A기관에서 비교적 오래 근무했고, 실무자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한 기관장조차도 입양실천의 윤리적인 원칙은 물론, 선행 연구결과와 선진외국에서 오랜 입양 실천경험을 통해 입증한 '최선의 실천(best practice)'과는 무관하게 실천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입양실천이 진정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천으로 발전하려면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입양실천능력을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리나라 입양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실천 내용이 과연 입양실천 원칙에 부합하고 '최선의 입양실천'을 토대로 하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가 입양기관이 헤이그국제입양협약 기준을 준수하는지 인증하도록 공인한 유일한 기구인 인증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는 입양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을 직급이나 역할에 따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 슈퍼바이저는 아동과 가족서비스, 입양, 국제입양에 관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인가받은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심리학 등 관련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야 한다. 그 외 실무자도 석사학위가 있거나 입양관련 경험이 있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Council on Accreditation 홈페이지, 2017). 영국과 스웨덴, 미국 모두 가정조사서와 아동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도 법으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입양실천에서

가정조사서와 아동보고서의 작성이 얼마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둘째, 입양기관 실무자의 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입양실무자 보수교육은 입양 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양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천원칙이나 지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A기관 실무자의 면접 결과 기관의 신입 직원으로 입양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은비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비 입양가정이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준비해야 하는 입양 실무자가 입양실천의 원칙은 물론, 입양이슈나 입양아동의 욕구에 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예비 입양가정의 준비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서비스를 제공해 줄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양실천의 전문성이 높아지려면 무엇보다 입양기관 실무자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입양기관 실무자가 교육과 훈련 없이 입양업무를 시작하는 것과 부실한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입양가정과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는 일이다. 따라서 입양기관 실무자의 업무 개시 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입양실천원칙, 입양삼자의 욕구와 문제, 입양이슈 등을 깊이 이해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보수교육의 시간을 늘리고 내용도 훨씬 더 강화하고, 교육과 훈련도 입양기관 실무자나 기관장이 아니라 입양관련 연구결과와 입증된 '최선의 실천'을 기반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증위원회에서는 입양기관의 직원이 교육·훈련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는데 일반직원과 신입직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내용을 구분해서 제시한다. 인증과 평가과정에서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직원이 어디서 어떤 교육·훈련을 얼마나 많이 어떤 방법으로 받았고, 입양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지 등을 직원이 직접 서술해서 제출하게 한다. 또한, 기관방문을 통해 기관에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등을 증빙하는 교육·훈련 관련 파일을 검토하고, 신입과 일반직원교육과정이 실제로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그 외에도 최근에 고용한 직원과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는 직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직원, 일반직원을 직접 면접해서 교육·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한다(Council on Accreditation 홈페이지, 2017).

가정조사서와 아동보고서의 작성, 상담서비스, 입양부모의 준비, 사후서비스 등 임상적 기술과 판단의 적용이 필요한 입양업무를 맡은 신입직원의 경우 반드시 ⑴ 헤이그협약의 의무사항과 규칙, ⑵ 아동의 이민과 관련된 규정, ⑶ 직원이 담당할 국가의 입양법, ⑷ 관련 주정부 법, ⑸ 국제입양의 윤리적 원칙과 아동매매의 금지, ⑹ 기관과 개인의 목표, 윤리적·전문적 지침,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절차, ⑺ 기관이나 직원이 상대하는 인구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Council on Accreditation 홈페이지, 2017).

그 밖에도 기관은 신입 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뿐 아니라 ⑴ 아동의 국가에서 아동에게 입양가정이 필요하게 한 요인, ⑵ 원가족과 관련한 아동의 분리와 애도, 상실 경험, ⑶ 애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⑷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겪는 심리적 이슈, ⑸ 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⑹ 국제입양 아동의 결과와 다른 보호서비스보다 영구적 가정배치가 좋은 점, ⑺ 담당하는 국가의 아동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의료적, 심리적 문제, ⑻ 입양가정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⑼ 인종, 종교, 문화, 국제입양의 영향 등을 포함한 문화변용과 동화와 관련된 이슈, ⑽ 입양의 영향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 성인의 발달 등의 주제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신입직원이 최신 입양실천과 관련된 이슈에 관해 세미나와 콘퍼런스, 온라인 교육 등에 참여하여 적어도 2년마다 30시간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Council on Accreditation 홈페이지, 2017). 이렇게 인증위원회가 이렇게 신입직원의 철저한 교육·훈련을 요구하는 것은 입양기관 실무자가 입양가정과 아동을 효과적으로 도우려면 그만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선 필요사항

○ 입양실천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관의 입양실천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

○ 입양기관 실무자의 업무 개시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윤선(2016). 국내 입양부모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21권 2호, 345-366.

노혜련·김미원·조소연(2015).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박인선(1994).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인선(1995).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안), 국민복지기획단 제3분과 전문가 보고: III-21, 제2주제.

변미희·안재진·강지현(2015).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연구, 중앙입양원.

변미희·안재진·신혜령(2016). 입양환경 변화에 따른 입양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입양기관 실무자 의견조사, 한국아동복지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이경은(2017).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논문.

이숙정·유지현·박소연·김주희(2016). 입양부모 조사방법 연구, 중앙입양원.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7). 입양실무매뉴얼.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6).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제1기 입양기관장 과정.

000입양원(2016). 진상조사위원회 제출자료.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7). 000입양원 실무자 개별면담 녹취록.

Barth, R. & Berry, M.(1988). *Adoption and disruption: Rates, risks, and responses*.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Berman, L. & Bufferd, R.(1986). *Family treatment to address loss in adoptive families*. Social Casework, pp. 3-11.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5). *The adoption home study proces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Adoption disruption and dissolu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Consortium for Children(2005). *Structured analysis family evaluation(SAFE)*.

Costin, B, Bell, J. & Downs, W.(1991). *Child welfare: Policy and practice.*

Longman.

Crea, T., Barth, R., Chintapalli, L. & Buchanan, R.(2009a). The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of SAFE: Frontline responses and the transfer of technology to practice. *Child and Youth Services Review*, 31(8), 903~910.

Crea, T., Barth, R., Chintapalli, L. & Buchanan, R.(2009b). Structured home study evaluations: Perceived benefits of SAFE versus conventional home studies. *Adoption Quarterly*, 12(2), 78~99.

Festinger, T.(1990). Adoption disruption: Rates and correlates. In D. Brodzinsky & M. Schechter(Eds.), *The psychology of adop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18.

Johnston, P.(1984). *An adoptor's advocate*. Indiana: Perspectives Press.

McRoy, R.(1999). *Special needs adoptions: Practice issue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Nelson, K.(1985). *On adoption's frontier: A study of special needs adoptive families*.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Noh, H.(1989). *Identity development in Korean adolescent adoptees: Eriksonian ego identity and racial/ethnic identi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pulished Paper.

Schwam, J. S. & Tuskan, M. K.(1979). The adopted child. In J. D. Nospitz(Ed), *Basic handbook of child psychiatry* (Vol. 1), 342-348.

Smith, S., Howard, J., Garnier, P. & Ryan, S. (2006). Where are we now? a post-ASFA examination of disruption. Adoption Quarterly, 9(4), 19-44.

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2009). *Adoption: Handbook for the Swedish social services.* http://www.socialstyrelsen.se/Lists/Artikelkatalog/Attachments/8299/2009-101-5_20091015.pdf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Statutory guidance on adoption for local authorities, voluntary adoption agencies and adoption support agencie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70100/adoption_statutory_guidance_2013.pdf

홈페이지

Adoption Larning Partners 홈페이지. 2017 검색. “Adopting older children"
http://www.adoptionlearningpartners.org/adopting/adopting-older-children.cfm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홈페이지. 2017 검색. “Postplacement Adoption Casework Practice”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adoption/postplacement/

Consortium for Children 홈페이지. 2017 검색.
http://www.safehomestudy.org/SAFE/SAFE-Overview.aspx

Council on Accreditation 홈페이지, 2017 검색.
http://coanet.org/standard/pqt/

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 Permanency Network 홈페이지. 2017 검색.
http://www.adoptpakids.org/AdoptiveParent.aspx

신문기사

가톨릭신문. 2016년 12월 4일. [대림기획]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000입양원을 찾아가다.

문화일보. 2013년 11월 19일. 입양희망 66% ‘여아 선호에 남아 입양프로젝트’ 진행중.

시사저널. 2016년 12월 8일. 죽어가는 아이들, ‘입양’의 두 얼굴.

뉴스1. 2013년 1월 26일. ‘아이가 버려진다’, ‘입양특례법’ 보완 재개정 목소리 높아져

한국정책신문. 2017년 1월 5일. ‘입양제도, 규제도 좋지만 미혼모 현실 고려해야.’

SBS뉴스. 2015년 5월 11일. 입양 허가만 기다리다. 취소 사례 속출 ‘씁쓸’.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 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우리나라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서 민간중심성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있어서의 민간중심성은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등 국가의 개입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에서도 그 사정이 다르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 원가정 복귀(family reunification)와 더불어 영구히 가정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permanency plan)의 하나인 입양에 있어서의 제도적 미비함과 그 운용의 부실함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번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입양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의 문제도 동시에 지적되었다. 이들 문제의 많은 부분은 아동학대사례의 발굴부터 대응, 사후처리과정, 그리고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와 입양절차 진행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 미비한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입양절차의 경우 입양대상 아동의 부모가 입양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입양대상 아동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입양기관 및 산하 보호시설의 배타적인 보호와 관리 아래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민간입양기관의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이들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공공의 모니터링 및 개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이들 민간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부처도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을 입양절차상 공적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입양제도 및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는 입양관련 업무를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후에 직접 수행하거나, 이들이 설립한 전문기관을 통해 수

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원칙이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아래에는 이러한 전제 하에 우리나라 입양제도를 입양 전, 입양과정, 그리고 입양 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각 단계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생부모 및 아동, 그리고 입양부모 등 입양의 주요 주체들에게 요구되거나 필요로 하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7].

1. 입양 전 단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20조에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적 환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결국 “일시적 혹은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하는 (혹은 당하는) 것이 아동의 입장에서 특수한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국가의 아동이 이러한 특수한 위기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같은 조에 “3. 이러한 보호조치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입양을 이들 특수한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시적 혹은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입양의 적절성과, 제도적 완성도, 운영의 치밀함 등을 논하기에 앞서 입양과 같은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한 위기상황에 아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을 하는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입양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하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입양 전단계 제도개선방안은 입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도와 절차에 대한 제안보다는, 입양까지 이르지 않도록 원가족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위한 제안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입양을 고려하는 부모의 경우 그 과정에서 가용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

7) 아래 글에는 이들 주요 주체들 외에 (민간) 입양시설 및 기관에게 요구되거나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입양업무가 국가와 지자체, 혹은 그들이 설립한 전문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민간 입양기관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축소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입양업무가 거의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현재적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들 민간 입양기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에서 최선의 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아동인권 차원의 보편적 지원제도의 도입과 확충이 선결되어야 한다.

아동이 입양에 이르는 과정에는 사고에 의한 생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빈곤, 계획되지 않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양육준비의 부족, 가정내 양육에 필요한 지지체계 및 자원의 부재 등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가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이 어느 누구도 '특수한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인권 차원의 보편적 지원제도의 도입과 확충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보편적인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보호권의 보장을 위해 의료, 교육, 돌봄, 여가, 안전 등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공적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수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편적으로 보급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잠재적 위기도가 높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보편적 지원제도의 구축 및 개선과 더불어 빈곤가구, 미혼모 가구, 조손가구 등 상대적으로 '특별한 위기상황'에 처할 잠재적 위기도가 높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 예로, 국내외입양아동을 발생 사유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혼모(2015년 현재 국내입양기준 90.5%; 해외입양기준 95.7%)[8]인 점을 고려하면 미혼모 양육에 대한 낙인 등 사회적 인식의 개선, 미혼모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육아용품 및 보육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현물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이들 미혼모들이 아동을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확충이 필요하다.

8) 중앙입양원, 2015. 국내입양통계.

● 양육 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개입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부모가 아동에 대한 원가정 내 양육을 포기할 것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개입방안도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수준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원가정내 양육을 포기하기 전에 특수한 위기 상황에 처한 부모가 아동을 성공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아동을 양육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현금 및 현물 자원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정보, 아동을 가정에서 아동보호체계로 보내는 과정과 그 결과(consequence)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아동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 생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아동을 아동보호체계로 보내는 결정이 가용한 모든 정보와 상황을 고려한 판단(informed decision)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선 필요사항

대상	제도적 장치
보편적 부모와 아동	- 아동수당 등 아동인권보장 차원의 보편적 지원제도 도입 -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제도 도입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 보육 공공성 제고 - 공공 방과후 돌봄의 확충 및 질 개선 - 아동의 쉴 권리 확보를 위한 도서관, 공연장, 공원, 녹지, 운동장, 체육시설, 수영장 등 여가문화체육 인프라의 확충 - 보편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일반적 위기아동	- 미혼모 가구 등 가구형태에 따른 낙인, 차별과 배제를 포함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위기 가구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지원의 확대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부모와 아동	- 입양 고려 생부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다양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 입양대기아동의 생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 아동을 양육시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현금 및 현물 자원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정보, 아동을 가정에서 아동보호체계로 보내는 과정과 그 결과(consequence)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아동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 생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 - 아동의 생부모 및 예비 양부모에 입양절차 및 과정, 결과에 대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2) 아동 및 생부모

● 입양대기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입양을 고려하는 '특별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양대기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또 다른 차원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입양특례법에 규정된 입양숙려기간 동안 친생부모대상 개입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입양숙려기간이 아동을 입양절차에 양도하기 전 최종적인 숙의단계임을 고려하여 친생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정보제공, 지지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 입양대기아동의 무분별한 시설 수용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입양대기아동의 무분별한 시설 수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입양대상아동 확인 후에 관례적으로 아동수용보호의뢰가 같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입양대기 아동이 친생부모와 결별하여 필요 이상으로 조기 시설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입양대기아동의 시설 수용이 입양대상아동 확인의 전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입양부모의 접근성 확보 등 입양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례적으로 조기 시설입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입양과정 내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미혼모자생활시설의 확충 등 필요 인프라의 구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입양대기아동의 입양이 현실화될 때까지 최대한 생부모와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상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통해 입양의 법률적 효력, 입양 전후 생부모의 권리, 입양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개선 필요사항

대상	제도적 장치
입양대상아동 및 생부모	- 입양숙려기간 동안 생부모 대상 개입 프로그램 강화 - 아동양육 정보 제공 - 입양대기아동의 생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 입양의 법률적 효력, 생부모의 권리 등에 대한 충분한 정

	보 및 교육기회 제공 - 입양대기아동의 시설 수용 제한 - 입양대기아동이 입양결연시까지 친생부모와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 및 필요한 지원(거주시설(예: 미혼모 자시설) 등) 제공 - 아동수용보호의뢰(와 이에 따른 입양대기아동의 시설 수용)가 입양대상아동 확인 의뢰의 전제조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함

3) 예비 양부모

● 예비 양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 관리와 사전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 관리와 사전 교육 강화는 입양 전단계에 예비 양부모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예비 양부모 자격 요건의 관리는 이번 대구 및 포천의 학대사례와 관련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지점이다. 특히 포천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입양부모가 입양특례법상으로는 양부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간의 동의에 의한 민법상의 입양으로 간주되어 최소한의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허점이 노출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양임에도 불구하고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입양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포천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민법상의 입양이라 할지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양의 경우는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예비 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의 강화 또한 입양 전단계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는 크게 두 개의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가 교육시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형식의 강화이다. 현재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제10조 제3항)에는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적인 교육의 형식과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 입양기관은 평균적으로 1일 8시간 정도의 예비 양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영국의 총9회에 걸쳐 27시간, 스웨덴의 총 7회에 걸쳐 21시간, 미국의 총 27-30시간에 비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1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9]. 현행 예비 입양부모교육은 결과적으로 예비 입양교육을 입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이에 근거한 양육교육에 이르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1회성 교육으로 이어지는 요소가 되고 있다.

9) 미국의 경우 영아 입양에 한해 총2회 12시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변미희, 안재진, 강지현 (2015). 예비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연구. 중앙입양원.

다음으로 입양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의 운영은 입양특례법(제10조 제3항; 제21조 제3항;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다. 교육의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사의 선정, 수강생의 규모 등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입양교육의 내용과 운영상황에 대한 공적 개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앙입양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입양교육의 내용과 운영형식에 대한 표준적인 안을 만들고, 강사의 경우도 전문강사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선 필요사항

대상	제도적 장치
예비 입양부모	- 예비 양부모 자격요건 강화 - 아동에 대한 입양의 경우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으로 일원화하여 입양부모 자격요건 검증의 사각지대 해소 - 예비 양부모 부모교육 강화 - 예비 양부모 부모교육 시간 현실화 및 내용적 강화 - 예비 양부모 교육에 대한 공공(중앙입양원)의 적극적 개입 및 관리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2. 입양/결연과정

아동이 입양을 위한 준비과정인 입양대상아동확인을 거쳐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된 시점부터 실질적인 입양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예비양부모와 아동 사이의 결연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입양대상아동의 보호 및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입양결연 과정 전반에 걸쳐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기이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및 결연과정 전반에 걸쳐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 단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수준의 개입과 관리감독을 통해 입양 및 결연과정 전반에 걸쳐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표는 궁극적으로 입양업무 전반을 공공업무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입양의 공공업무화 방안은 몇 가지 경로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앙입양원의 성격을 입양업무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입양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에 맞는 전문인력의 충원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내에 입양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립하고 입양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해당 지자체내의 입양실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양기관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는 입양과정에 대한 공적책임성 강화의 기본 조건이다.

이와 같은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도, 입양과정 전반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는 현재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입양 및 결연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책임성의 강화는 입양기관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입양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업무와 대한 관련 규정이나 표준 매뉴얼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입양을 공공업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입양을 공공업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의 형태로라도 입양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입양업무를 담당하기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입양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원의 입양관련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입양심사를 통한 입양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관련 전문성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심사 전문 법관이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전문 법관 양성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입양 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 일상적 협업을 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대상	제도적 장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입양기관 시범운영 및 확대 - 민간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마련 - 입양의 공공업무화 계획 개발 및 시행 - 중앙입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격 재정의를 통해 입양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가 입양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인프라의 지원 - 입양 심사 및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전문성 강화 - 입양전문 법관, 조사관 제도 신설 및 운영 - 입양전문 법관 및 조사관 양성과정 운영 - 입양심사 과정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와 법원의 협업관계 구조화

2) 아동 및 친생부모; 예비 양부모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권리(예: 동거; 입양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하여야한다.

입양대상아동확인을 거쳐 입양대상아동이 된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원하는 경우 입양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한다. 입양대상아동이 입양결연 과정을 통해 양부모의 가정에 입양되기까지 친생부모의 의견은 반영되어야 하며, 그 수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양대상아동의 입장에서 입양결연 과정에서 최대한 친생부모와 동거할 수 있는 시설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모(부)자보호시설의 확충을 통해 원하는 경우 입양대상아동이 친생부모와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예비 양부모에 대해서도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비 양부모는 결연과정에서 입양대상아동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만큼 해당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받아야 하며, 이 시기에 아동과 바람직한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개선 필요사항

대상	제도적 장치
아동과 친생부모	- 입양 및 결연과정에 친생부모의 의견 반영통로 보장 - 입양 및 결연과정 동안 입양대상아동과 생부모의 동거를 보장할 수 있는 모(부)자보호시설 확충
예비 양부모	-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아동과의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

3. 입양후

- 입양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입양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아동의 입양이 완료된 후에는 입양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입양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아동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공적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입양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의 수준, 그리고 공개의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입양아동이 원하는 경우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 및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상호간에 적응하여 성공적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 필요사항

대상	제도적 장치
공공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 아동과 친생부모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아동 및 양부모	- 입양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 중심의 지원 및 사례관리 -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

대구사건으로 본 아동학대 예방체계 제도 개선방안

제충만 대리(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

1.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조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

1) 아동학대 신고 상호 통보 의무화

은비가 A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을 당시 병원에서는 은비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하였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통보를 하지 못하였다. 경찰 측 의견에 따르면 3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나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33초, 114초, 42초) 제대로 된 사건 통보가 됐을리 없다. 실제 통화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어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을 했는지 조차 경찰은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가 되어, 상담원이 함께 출동하여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고 적절한 서비스 개입을 했더라면 몇 달 후 은비가 심정지 상태로 다시 응급실을 가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서로 협의 검토하여 작성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2014.9)>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접수 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응급아동학대의 경우 동행을 요청해야 한다. 응급아동학대 신고는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은비의 경우 응급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아동학대신고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동행을 요청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 유선으로 협의해야 하지만 경찰은 현장출동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A대학병원 현장에서 A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고 사건을 오인신고로 종결하여 버렸다. 오인·허위신고의 경우에도 경찰은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확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 또한 진행하지 않았다.

범인을 잡는 수사에 특화된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하지만 112로 아동학대 신고가 일원화 된 이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동행출동 사례가 늘고 있다(2015년 34.2%, 2016년 41.8%). 따라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취지에 맞춰 서로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상시 관계에 따라 공조 수준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특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동행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라는 항목을 ‘요청해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특정 기간을 두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호간에 신고 접수 통보가 누락되는 건은 없는지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2) 현장출동 상황에서 명확한 역할 정립

B대학교 응급실에 은비가 심정지 상태로 온 후 병원 의사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신고를 받은 B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였다. 하지만 현장조사 단계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를 조사해야 하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특히 은비 건과 같이 아동의 상태가 심각하고 범죄 혐의가 짙은 사안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 분위기 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상대적으로 끌려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떨 때는 따로, 또 어떨 때는 함께 출동하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분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동업무 수행지침에는 현장출동에 대한 프로세스 안내와 해야 할 사항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서로 협력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를 조사”한다고만 나와 있고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조사자’라는 표현을 써서 정확히 누구의 역할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 결과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업무를 배분하다보니 상호간의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가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다른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아동의 상태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아동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대 판정을 줄곧 미루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된다.

3) 사례관리 과정에서 정보공유 활성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찰의 수사를 받은 관계인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청취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주요한 수사 정보는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의 수사 정보는 함부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와 개인정보수집 권한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충분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 (APO)을 적극 활용하거나 평소 경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적 역량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대한 학대사건의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회의를 정례화하여 기본적인 사건의 진행정보를 공유하고 개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만약 현행법 테두리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또한 학대예방경찰관 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016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상시 점검과 보호 지원 업무를 전담할 학대예방경찰관 의 수를 1,05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년 3월 기준 303명). 이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상담원 수 522명(기관장 제외)보다 많은 것이다. 하지만 학대예방경찰관 의 역할이 가정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현장조사 및 사건 모니터링 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역할과 일정 부분 겹치기도 한다. 또한 학대예방경찰관 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수사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충분한 의견을 내지 못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한다. 따라서 학대예방경찰관 이 경찰 내 수사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에서 정보공유와 상호 조율을 충분

히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4) 전문성 강화

은비의 사망사건을 돌이켜보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준수되어야 할 많은 절차들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신고 과정에서 A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파출소가 최초 접수)로 신고 된 시각이나 경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 또한 기록이 없어서 제대로 통보가 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수사를 방해한 A교수가 누구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의료인의 경우 주치의의 소견자료를 요청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결국 오인신고로 현장 종결했고, 이 사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마찬가지다. 가장 기본적인 아동의 상흔 확인과 학대 증거 수집은 현장출동 당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며 추후에라도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 또한 은비 외에 다른 아이에게서도 이마와 턱에 긁히거나 맞은 듯한 상흔과 눈에 50원 동전 크기의 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후 남은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7월 15일 현장조사 이후 2차 가정방문은 8월 30일 언론의 관심이 나타난 뒤에야 이루어졌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를 통해 피해아동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본 등 여타 행정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전에 은비의 경우 입양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법원에 입양허가 판결이 있기 전 적극적으로 학대 의심 여부를 알려 입양허가 판결이 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진 않았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인식, 현장에서 상호간 역할과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을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경찰과 상담원이 업무 수행지침을 충분히 익혀야 하고, 이를 점검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아동학대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경찰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필수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 관련자의 교육 강화

1) 아동학대 대응 관련 직군의 아동학대 직무교육 의무화

은비가 1차 입원(A병원 응급실) 당시 담당 주치의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였고 병원 내 학대위원회에 신고하여 총무과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어 신고를 받은 A경찰서에서는 지구대 포함하여 10여명의 경찰이 즉시 출동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의 의견만을 듣고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학대의심 신고에 대해 조사를 종결시켰다.

학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학대에 대한 지식과 민감성을 지니는 것은 아동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이다. 특히 신고가 112로 통합된 상황에서 경찰의 출동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출동하는 여성청소년계 수사팀 또는 학대예방경찰관 에게 학대대응 관련 직무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이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현장에 출동하는지 알기 어렵다. 지난 해 김정우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교육원의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전문과정'을 이수한 학대예방경찰관 은 배치 된 인원의 3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경찰이 학대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아동학대 관련 충분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사건은 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으로 함께 대응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100시간의 전문상담원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아동학대 대응 및 개입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경찰, 검사, 판사 등은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학대예방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신고의무자 대상 학대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요

정부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24개 직군에 대해 학대예방교육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직원이 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 이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자가 많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최소한 병원 응급실이나 소아과, 소아청소년정신과 등) 응급 혹은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하는 의사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직군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는 해당 기관의 모든 종사

자가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하고, 학대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요 업무를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에 집중하기로 함에 따라 학대예방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필요시 지원을 하는 업무로 규정하였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는 연 1회 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의무자 대상 학대예방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사건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내실있는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며 얻은 교훈(예를 들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체벌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심각한 학대행위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적 평판과 아동학대사건은 별개라는 점 등)을 교육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예방체계 인프라 확충

1) 상담원 확충과 소진 예방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인원은 710.7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19,214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29,669건으로 54%나 신고접수가 급증하였다. 신고접수 증가에 따른 적정인원을 환산하면 1,094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2015년 기준 배치 상담원의 수는 522명(기관장 제외), 딱 절반 수준이다.

또한 2015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아동 수는 한 곳당 평균 203,467명이며, 최대이동거리는 평균 57km, 최대이동시간은 평균 72분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처리해야 할 반경이 무척 넓은 것이다. 2016년 김순례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담원 1인당 하루 사건 처리 건수는 평균

4.73건이었고, 가장 많은 평균 건수를 기록한 안산의 경우 11.71건을 기록했다. 상담원 1인당 약 2만4,998명 아동을 관리하고 있고,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1,860명)의 10배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은비와 같은 사례 하나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청하는 것조차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아동을 학대피해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가 더 늘어야 한다. 2017년 1월 기준 전국에 60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최소 100개로 증설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드림스타트 체계처럼 각 시/군/구별로 최소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상담원의 숫자가 확충되어야 한다. 상담원 1인당 적정 사례수를 결정하고,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간 사례수를 토대로 적정 상담원수를 산출하여 필요 수만큼 상담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무스트레스와 상담원 소진을 줄이고, 상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상담원 이직률을 낮춰 상담원들이 시간에 쫓기거나 소진된 상태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쌓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례에 개입하여 은비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 아동학대 예방 예산 확충

2015년 정부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업무를 10년 만에 국가사무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예방 예산이 일반예산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나온다. 그 결과 2017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편성된 중앙정부 예산 266억 원 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183억 원, 복권기금에서 42억 원,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41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의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에서 한계가 있다. 총 600억 원 규모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쓰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 증액이 쉽지 않고, 기금 규모를 변경하려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개정이 필요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건수도 2014년 14건에서 2016년 36건으로 늘었지만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2015년 252억 원에서 2016년에는 이보다 줄은 185억 원이었다. 2017년에는 이보다 조금 늘어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인 266억 원에 불과하다. 사망 아동 수가 급증하고 신고가 54%나 증가해도 예산은 그대로인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4.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1) 체벌금지를 통한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은비의 비극적인 죽음의 근본 원인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를 때려서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 학대 가해자인 A씨는 법정에서 “나는 단순 훈육을 위해서 체벌한 것 외에는 학대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다수 학대 가해 부모들이 일관되게 하는 주장이다. 결국 심각한 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학대예방교육 시 아동복지법 제5조2항의 내용(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반드시 알리고, 훈육차원의 체벌도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현재 신체적인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체벌을 용인하는 조항이 남아 있는 학원법, 민법을 개정하여 어떠한 폭력(정신적 폭력 포함)도 성인에게 허용되지 않듯이,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체계 개편

아동학대 사건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두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책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주체는 정부이다.

영국과 미국의 선진 사례에서도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1년 빅토리아 클림비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 이후 클림비의 사망을 막을 기회는 없었는지, 현재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구멍은 어디인지와 같은 질문을 두고 3년 간 약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0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펼쳐냈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이어졌다.

미국에서도 2016년 2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아동 보호법(Protect Our Kids Act)'을 근거로 상·하원 의원, 현직 교수, 관련 단체 종사자, 판사 등 12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발간한 보고서이다. 위원회 운영비로만 연간 약 2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의 핵심 정책제언은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죽음을 꼼꼼하게 되짚을 것'이었다. 아이들의 죽음을 복기하는 게 모든 전략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이서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방사무로 있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업무를 10년 만에 국가사무로 전환되었다. 이번 <대구·포천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도 면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구성한 것이다. 향후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허점으로 기인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친부모 양육지원 방안

목경화 전대표(한국미혼모가족협회)

1. 대구 은비 사례를 보면서 친부모 양육지원 방안

은비 엄마는 은비를 17살에 낳아 나홀로 생계를 꾸리면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느라 은비를 어쩔 수 없이 24시간 돌봐주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됐다. 24시간 보육료가 벅차서 은비가 17개월 될 무렵 경기도에 위치한 보육원(고아원)에 맡김으로 인해 보육료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가 되었다. 고아원에서는 보육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 은비엄마도 외조모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은비가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것에 마음아파 했다. 주위에서 입양을 보내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해서 입양을 보내는 결심을 하게 되고, A기관에서 상담을 할 때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좋은 양부모에게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다고...* 그러나 은비는 1차 입양전제위탁가정에서 3개월 만에 양모는 은비의 과도한 관심 끌기 행동, 식탐 등 더 이상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지 않는 다는 이유로 A기관으로 돌려보내고, A기관은 약 1개월 만에 2차 대구입양가정으로 입양을 보내게 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7개월 정도 걸렸고, 그 사이에 은비는 학대로 뇌사에 빠지게 됐다. 은비 생모는 은비의 뇌사를 알게 되어 입양을 취소하고 싶어서 A기관에 상담 했을 때 은비의 병원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은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망설이게 됐다고 한다.

개선 필요사항

○ 시설보호 이전에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하도록 양육의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전담 상담 창구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상담 담당자는 부처 간 또는 지역 내 동원이 가능한 모든 보육지원책을 숙지하여 위기 가정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

○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설 보육이나 입양보다 가정위탁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 지원해야한다. 이와 동시에 아동이 원가족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해야한다.

○ 친생부모에 대한 사전 상담을 입양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여 원가정 양육시 지원 정보와, 입양외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 친생부모가 입양을 의뢰하는 것만으로 입양이 개시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적 심사(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를 거쳐 입양이 개시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한다.

○ 친생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입양철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양상담시 친생부모에게 입양철회에 대한 권리를 정확히 구두로 설명해야하며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입양동의 철회시 입양기관이나 양부모로부터 그동안 아동 보호에 들여간 비용에 대해 지급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2. 포천 A양 사례를 보면서 원가족 보호 및 입양절차 개선사항

포천 A양 친모는 남편과 협의 이혼 한 후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A양 친모는 친정을 비롯해 주거지를 떠돌아 다녀야 됐고, 임대주택을 제공받게 되었지만 보증금 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늦게까지 허드렛일을 해가며 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웃에 살던 양모는 A양의 친모가 일에서 늦게 올 때 작은 애 A양을 자주 돌봐 주었고, A양 또한 양모를 잘 따랐다. 두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 결국에는 A양이 잘 따르는 양모에게 입양(민간)을 보내게 된다.

개선 필요사항

○ 친부로부터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 할 경우 오롯이 나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어떤 가정환경에서든 아동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아동이 친부모와 분리가 되었을 때 오히려 복지 지원이 원활한 현행 아동복지지원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원가족이 분리 되지 않고 원가족 내의 아동양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느 가정의 아동이든 동등한 아동수당 제도가 필요하다.

○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위 사례처럼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못 들어가는 저소득 한부모들이 많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한부모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아동인권 보장에 구멍이 많은 민법상 입양 절차는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입양특례법으로 통합하여 아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이혼신고하러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할 때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자료 안내 배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친부모 양육지원 제도개선 제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제27조).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했고, 200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에서 “입양을 사실상 국가가 허용하는 제도”로 지적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전통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은비엄마처럼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온갖 편견과 빈곤에 시달린다. 학생의 신분으로 아이를 혼자 낳으면 학생미혼모는 교육을 더 이상 받기 힘들고, 직장을 다니던 미혼모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원가족과도 단절해야만 하는 미혼모.부가 많다. 아이를 스스로 키우는 미혼모.부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52%인 146만원이 되어야만 월 12만원씩 만 12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입양부모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만16세까지 월16만원(중증장애아동 월62만7천원/만18세까지)지원과 만18세까지 의료비가 무료이며 심리상담비용까지 지원받는다. 아동이 어느 가정에서 키워지느냐에 따라 양육수당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미혼모.부와 그 아이들을 위해 혼자서도 양육·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도입

○ 아동양육환경은 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양육과정에서의 기회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등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정착되어야 한다.

미혼모.부가 되면 무섭고, 두렵고, 혼란한 마음을 갖게 된다. 특히10대 미혼모.부는 정서적 심리가 더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10대라고 해서 무조건 낙태 또는 입양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학생의 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미흡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10대 미혼모.부도 학업을 충실히 하면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원스톱 서비스 구축

○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상담 창구(Hot Line)을 개설·홍보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밀착 지원을 할 수 있는 매칭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임산부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임산부가 무료로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제도를 확보해야한다.

○ 모든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산모수첩에 양육 미혼모·부자 지원서비스 및 미혼모·부 당사자조직 안내하고, 산전 진료부터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홍보한다. 예를 들어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주거시설안내, 양육지원서비스 안내 등을 하여 출산을 돕는다.

2015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미혼모.부의 영유아 자녀가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나홀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생활안정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안정, 자립교육(학업포함), 아이 돌봄서비스,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 이것을 3+1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 3+1

○ 주거안정 : 10대 미혼모·부자가 지역사회에서 양육을 하고자 주거임대 계약을 하고자 할때 10대는 아직 미성년자임으로 임대계약을 할 수가 없어 매우 주거가 매우 불안정하다. 10대 미혼모·부라 하더라도 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독립된 가구 구성으로 봐야 됨으로 주거를 임대 할 수 있게 제3자가 임대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교육 : 10대 미혼모·부는 학업이 중단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전문직업교육 및 부모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아이 돌봄서비스 : 미혼모·부는 나홀로 양육을 하기 때문에 늦게 까지 일을 하는 직장인, 자립교육(학업)을 하는 미혼모·부는 아이 돌봄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나, 아이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는 미혼모·부가 많다. 실질적인 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 나홀로 양육을 하다 보니,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이 걸리기 쉽기 때문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미혼모·부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아이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낙태나 입양을 권유하여 결국 친생부모와 헤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선택을 최소화 하려면 정부 지원 뿐 아니라 성(性) 인지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흔히 미혼모는 있는데 미혼부(책임을 지지 않는 미혼모)는 없다.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다. 아이는 혼자서 가질 수 없다.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려면 원가족과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망가는 아이 아빠에게는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 책임을 지지 않는 비양육 미혼모.부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져야한다. 덴마크는 15살에 아이아빠가 될 경우 아이가 만18세가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됨으로 덴마크 남자들은 스스로가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비양육자인 양육책임강화 구축

○ 아이 아빠가 없는 아이는 없다. 아이를 위해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아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조건):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중위소득 52%이하이면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다.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
- 아동양육비: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만원씩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5만원 추가지원 (청소년미혼모는 대상에서 제외)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5만원씩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 가구당 월5만원씩 지원
- 2017년도 한부모 가족의 소득 인정액: 2인가구는 146만원, 3인가구는 189만원, 4인 가구는 232만원 이하

<2017년 중위소득기준 표>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비고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2%	859,524	1,463,513	1,893,276	2,323,038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포함)
60%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청소년한부모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지원대상(조건):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소년에게는 아동양육비, 고교생 학비를 주지않고, 교육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검정고시 학습비 지급
-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아동 1인당 월 17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습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고교생 학비: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정규 고교 과정 이수시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만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시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복지자금 대여

- 지원대상(조건): 실제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창업 또는 사업운영)을 제시하는 자로서 타기관의 유사한 목적의 자금과 중복 융자 금지
- 지원내용: 운영자금 및 점포임차금 지원, 상권 및 입지컨설팅, 선정 이후의 기술교육지원, 사후관리, 심리정서상담, 법률자문 등
- 대여 기준과 조건: 1인당 4천만원 이내로서 연이율 1%, 대여기간은 8년, 월별 균등분할상환 월449,990원 이자포함.

❒ 보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100% 지원
- 아이돌보미 이용 우선권 및 이용료 감면
- 한부모가족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100%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 무료법률구조

- 양육비확보와 기타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토 론

1. **고경석** 회장 (한국입양홍보회)
2. **김외선** 소장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3. **유주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4. **김가로** 과장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
   – '대구 사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우철문 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6. **입양사망사건으로 본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7. **안문희** 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고경석 회장(한국입양홍보회)

작년에 대구에서는 입양특례법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이, 포천에서는 민법입양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발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발제자들의 입양과 관련된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구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2심에서 다툼이 진행 중인 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전제로 토론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입양부모로서 평소 생각해 왔던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1.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서 발제하신 교수님들이 제기한 개선 필요사항의 일정 부분에 대해 입양부모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은 입양부모들이 그동안 수차례 정부나 다른 단체에 건의하고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발제자가 제안한 입양과정의 공적절차 강화, 입양관련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횟수 및 시간 연장, 교육 내용 개선 등) 등은 입양가족들도 개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자가 입양은 '영구대리보호서비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어떤 의미로 이러한 단어를 선택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영구대리보호서비스'라는 말은 자녀들을 밤낮없이 내 몸 희생하며 아낌없이 사랑하고 양육하는 많은 입양부모들에게 또 한번 큰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입양을 통한 부모-자녀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입양은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며, 입양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된 입양부모는 입양자녀에게 부모인 것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 입양제도 개선방안 : 입양 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자가 이야기 했듯이 입양까지 이르지 않도록 원가족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위한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입양시스템 또한 국가가 개입한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많은 부분이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입양도 입양특례법을 적용한 입양과 같이 예비입양부모 교육 등 입양절차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도 많은 입양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발제자가 언급한 입양대기아동의 입양이 현실화 될 때까지 최대한 생부모와

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구축한 미혼모자생활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왜 입양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시설을 폐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권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발제자가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친생부모는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이는 비상식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 친생부모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입양부모, 입양아, 그리고 입양으로 인해 구성된 다른 가족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3. 아동보호체계 제도개선 방안

발제자는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조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로 첫째, 아동학대 신고 상호통보 의무화 둘째, 현장출동 상황에서 명확한 역할 정립 셋째, 사례관리 과정에서 정보공유 활성화 넷째,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동의하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양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체계 및 조치에 있어서는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입양관련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서는 입양가정 내의 아동학대 예방 및 사건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지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가칭)입양가정위기지원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기구 또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친부모 양육지원 방안

입양부모들은 원칙적으로 원가정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가 이야기한 ‘10대라고 해서 무조건 낙태 또는 입양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의 근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입양부모들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낙태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무조건 입양을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18년전 우리 한국입양홍보회가 공개입양 운동을 시작하면서 입양문화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양아동양육수당,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고 입양부모가 입양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입양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가정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양부모들은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체계가 갖추어 지기를 바랍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양부모들은 국가에서 원가정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매년 공식적인 모임에서 모든 입양가족들이 한목소리로 선언을 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원가정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는 경제적·교육적·사회적 지원체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갖추어 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토 론 문

김외선 소장(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입양가정 내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접하고, 같은 입양부모로써 우리 아이를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구사건의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2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입양부모의 아동학대사망이란 정명화된 토론회가 열린다니 의아스러웠습니다. 받은 발제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은 학대피해자가 되지 말게 하자는 주최 측의 진의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고자 토론에 임합니다.

네편의 발제문 모두는 두 사건을 '입양'과 '아동학대'로 연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아동구호, 아동학대예방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같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리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지막 발제문은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컨데 발제문 전체를 통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입양보다는 원가정을 지지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토론자는 먼저 입양과 같은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한 위기상황에 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동권리관점에서 최선이라고 하는 김진석교수님의 생각에 동의를 보내며, 미혼모들이 - 발제자는 포천사례를 들면서 '기혼'과 '이혼모'도 '미혼모'란 이름 안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음 -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국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더 큰 동의를 표합니다. 생명경시와 가족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낳은 부모가 아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애쓰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토론자도 이일에 적극 협력해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합심·노력하여 낳은부모로부터 포기되거나 분리되는 아동발생을 막으려고 해도 인류사에서 단 한 때도 그런 아동발생이 멈춘 적이 없었고 그래서 입양이 필요치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가정보호를 위한 노력만큼이나 입양에 대한 노력 또한 소홀하지 않아야하는 이유가 됩니다.

발제자들이 각각의 전문영역에서 충실히 제안했듯이, 입양가족상담사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할수 있는 입양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입양전제위탁과 입양의 동시 법적 승인

입양전 위탁과정은 아동과 부모가 서로 영구적인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입양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입양전 위탁과정에 공적개입이 있어야합니다.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위탁과 입양을 동시에 승인받은 후 아이가 입양 전 위탁가정으로 옮겨가게해야합니다, 그리고 입양담당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방문으로 아이와 가족의 적응상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동시에 개별 입양부모교육을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부모준비를 시키도록 해야합니다.

은비사례는 보완서류를 준비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1주일 후에 법원의 승인이 났습니다. 공적개입이 없었던 위탁부모의 입지는 입양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감으로 정서·행동의 심각한 문제와 통제가 불가능한 특수욕구아를 무방비상태로 보호하여야 했습니다. 은비엄마는 입양허가가 나는 즉시 자신의 다른 입양자녀에게 한 것처럼, 많은비용이 드는 종합의료검사를 받게하여 본격적인 치료를 하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수욕구입양아 지원 체계구축

특수욕구아입양 (큰아이입양) 을 위한 특화된 예비입양부모교육, 입양부모교육, 초기적응지원체계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입양당시에 나이가 든 '특수욕구아입양'은 가족부적응과 사고율이 높습니다. 큰 아이들은 생모로부터 강제분리된 이후 여러 생활장소로 옮겨지고, 여러명의 짜투리 양육자와 지내면서 나이가 듭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신적·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입니다. 입양가정으로 옮겨갈 때에는 발달의 여러 영역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고, 다시 옮겨지는 불안과 문제행동으로 새부모와의 적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특수욕구아입양은 현행 입양특례법 이전에는 가시적인 신체발달이 양호해보이기 때문에 쉽게 입양이 성사되었다가 쉽게 파양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구와 포천사고 두 아이 모두 전형적인 특수욕구아입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큰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양사전에 8시간의 예비입양부모교육 외에 별도로 학대와 방임된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교육을 8시간 더 이수하게 하고 그리고 특수욕구입양아 부모자조모임에 3회 이상 의무적 참여를 하게한 후 입양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해야합니다. 입양사후에는 아이가 집으로 옮겨온 즉시부터 아동치유와 가족적응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특수욕구입양아 가정의 사전·사후관리는 반드시 특수욕구입양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시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실무자와 교육자의 입양전문성

아동생명과 가족미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입양실무자의 전문적 역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은비사례에서는 입양절차업무가 다수의 비전문 담당자에 의해 비일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양부모들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느껴지면 부모역할을 잘못한다는 죄책감과 외부의 입양편견을 만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들의 입양을 도와준 입양기관과 담당자를 떠올리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입양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실무자들이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입양가족심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특수욕구아 입양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서적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입양실무자들의 전문성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으로 남지만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입니다.

입양가족심리전문요원양성 및 학대예방 체계구축

입양아동학대예방 체계가 전국망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입양가족을 진단하여 가려진 학대가능성을 발견하고 즉각 조처할 수 있는 입양가족심리전문 요원들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특수욕구아 입양가정의 사고는 입양초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후관리자는 입양초기에 가족부적응상태와 아동학대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예방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대가 진행 중인 가정의 속성은 점점 외부와 차단되는 경향이 있고, 더구나 요식적으로 행해지는 사후관리과정에서는 입양실패를 피하기 위해 입양부모와 심리적 결탁이 일어나 아동학대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경시 될 수 있습니다. 입양사후관리자가 입양가족심리전문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비입양부모발굴을 위한 홍보

입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합니다. 건강한 입양부모를 발굴할 수 있는 확률은 예비입양부모 수가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현재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 수에 비해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은비사례와 같이 입양기관은 한번에 두명입양을 권하였고, 권유를 받은 은비엄마는 부모없이 상처받은아이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접지 못하고 수락하였습니다.

혹자는 입양하려는(혹은 입양한) 사람들이 아이를 고르기 때문에 입양되어야 될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에게 입양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가

족의 삶 자체이자 가치입니다. 평생을 같이 할 가족을 맞이할 때 신중을 기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양이 필요한 아이가 입양되지 못하는 이유를 입양을 실천하려는(혹은 실천한) 사람들의 부족함에서 찾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한 아이에게라도 더 부모되어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만약 우리사회에 입양이 필요한 한명의 아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열명이 넘는 예비입양부모가 줄을 서고, 그중에서 엄중히 감별하여 선택된 입양부모를 부러워하며 “행운이네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입양에 관한한 집단적인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민이라면 입양 유경험자나 무경험자나 모두가 입양에 관한한 치우친 사고를 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양부모들을 ‘시혜자’로 봤다가 ‘학대자’로 봤다가하는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 입양을 부정하는 편견 그리고 그러한 집단사고에 근거하여 일관성없이 바뀌는 입양법과 제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식을 왜곡시켰던 많은 것들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입양에 관한 왜곡된 집단사고 또한 새나라 국민답게 통합할 수 있어서 그에 근거한 새로운 입양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유주헌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가로 과장(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

- '대구 사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우철문 과장(경찰청 여성청소년과)

Ⅰ. 들어가며

지난해 발생한 '대구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15년 12월 '인천 11살 소녀 감금 사건'과 이듬해 발생한 '평택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정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은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등 정부 합동점검에 대응하고 기존 학대사범 검거 및 수사에서 더 나아가 예방 및 사후관리 등에 적극 나서기 위해 지난해 4월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을 발족하였다. 이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기관협력 역할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추동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조치였다.

<학대예방경찰관 임무>

① 학대의심 신고시, 학대 정황 등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동행 출동
② 재발우려가정 및 학대위험 대상자 관리 및 지속 모니터링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 間 협력
④ 아동.노인학대 발견 제고를 위한 범정부 추진 합동 점검 등 협조
⑤ 치료.법률지원, 상담연계, 생활지원 등 회복·재발방지 등 사후지원 연계
⑥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이뤄 현장에서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활동을 펼친 결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동행조사율 및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5년 대비 '16년에 대폭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구분	동행출동 건수	신고건수(경찰 통계)
'15년	11,915	6,926
'16년	22,253	16,680
대비(%)	86.8%↑	140%↑

또한, '15년부터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수사 부서인 '여성청소년수사팀'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송치건수 등 사법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눈에 띄는 변화도 있었다.

구분	송치		임시조치
	건수	인원	
'15년	1,754	1,973	684
'16년	2,985	3,347	1,174
대비(%)	70%↑	69%↑	71%↑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한 '대구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본 토론회를 통해 '대구 사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찰이 제도적으로 개선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아동학대 예방체계 전반에 있어 더욱 보완해야할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대구사건' 관련 발제문에서 지적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보완 설명을 한 후, 여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대구 사건' 관련 경찰 조치에 대한 보완 설명

앞서 발제문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못하였고, 경찰이 출동과정에서 상담원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오인신고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남부경찰서와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최초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15시경 이후 대구남부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이 당시 관할인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3회 통화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남부경찰서에서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전화로 1회, 이후 기관 공용 휴대폰 전화번호로 2회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두 번째 통화는 3분여, 세 번째 통화는 2분여간 통화였다.

통화일시	시작시각	전화받은 번호	사용초	전화 건 번호
2016-04-05	15:03:26	053-623-****	33.8	053-650-****
2016-04-05	15:22:05	010-2***-****	198.4	053-650-****
2016-04-05	16:28:37	010-2***-****	114.4	053-650-****

당시 사건을 접수한 학대예방경찰관은 해당 신고사실을 전달 받은 직후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였고, 이후 오인신고라고 재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진상조사 시점이 사건발생 이후 약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정확한 통화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초 신고 접수와 근접한 시간에 3회 통화한 기록에 비추어봤을 때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오인신고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통보와 관련한 절차 개선 부분은 추후 설명하겠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호 통보 여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구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주치의가 아닌 A의사의 개입을 배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아동 가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학대가 발생할 가정이 아니라는 A의사의 주장을 믿고 사건을 오인신고로 종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A의사의 신분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운 조치였다. 다만,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최초 사건을 신고한 병원 직원과 사회복지사도 A의사의 주장에 자신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학대라고 판단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대학병원 소속의 공신력 있는 의사의 확신에 찬 진술을 쉽게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Ⅲ.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아동학대 신고 통보 절차 개선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원활한 공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신고 통보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통보 기록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112상황실.지역경찰 등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부서에서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개선된 매뉴얼은 학대예방경찰관이 총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일원화하였다. 학대 신고를 접수한 학대예방경찰관(야간은 여청수사팀)은 우선 유선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통보서'를 활용해 서면 통보한 후 통보 대장에 일시 및 수신인 등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관련 기록들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든 절차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 자체 업무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향후에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연계시켜 정보 공유 및 기록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발제문에서 제언하였던 '신고 상호 통보 의무화' 관련, 현재 경찰 매뉴얼상 응급 신고는 즉시, 일반 신고의 경우는 48시간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법제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동행출동 범위 개선 필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14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 동행 출동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경찰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여 '응급학대 신고'의 경우에만 동행출동을 요청하도록 한정하였다. '대구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병원에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학대가 아니라고 판단, 동행출동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병원이 함께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기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확충하여 향후에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동행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 필요

경찰은 '대구 사건' 이후 '학대예방경찰관 개선 운영지침'('16. 10.)을 통해 아동학대 현장에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였다. 현장 출동 경찰관은 반드시 피해아동의 상태 등 학대 피해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가.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현장종결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도 반드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학대예방경찰관

에게 통보하고, 학대예방경찰관은 전수합심조사를 통하여 현장 출동경찰관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었다.

그러나 의료기관 안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경찰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구 사건'과 같이 A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대응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대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대아동보호팀'(「아동학대 방지대책」中)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이 주치의 등과 함께 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대아동보호팀'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전문화 교육 강화

앞서 언급한 제도 개선을 위한 매뉴얼 강화 및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응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난해 학대예방경찰관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직무교육 이수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물론 시행 첫해라는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 지적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학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관련 사이버 직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관련 직무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17개 각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교육센터'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과의 라포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한 상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고, 중앙경찰학교.경찰대학 등 신입 경찰 양성 과정 커리큘럼에 아동학대 대응절차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다.

5. 아동학대 예방 제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학대예방경찰관은 지난해 정원 138명에서 시작해 올해는 62명 증원되어 전국에 20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정원 외 134명을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총 334명이 학대예방경찰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5년 대비 ’16년에 140%나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외에도 가정폭력 및 새정부 주요 치안공약인 젠더폭력(각종 성차에 기반한 폭력)과 신규 치안수요인 장애인.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등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예산도 지난해 시설 점검.교육, 학대우려대상자 모니터링 지원, 업무시스템 개발 등 총 7억원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운영 기반은 마련하였지만, 어린이집(42,517개소).유치원(8,930개소) 종사자 등 전체 신고의무자 대상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 등 내실 있는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부족.업무과중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17년 상반기 인사시 많은 학대예방경찰관이 희망에 의해 교체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발제문에서 학대예방경찰관의 직급이 보통 여성청소년수사팀 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APO의 직급 상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개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성청소년수사팀과의 직급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 인프라 확충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앞선 발제문에서 밝혔듯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이직률도 높다는 사실은 학대 현장에서 긴밀히 협업해야 하는 경찰에도 부담이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체계 내실화를 위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양 기관이 균형 있게 발전해 가도록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Ⅳ. 맺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제도 관련 경찰의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책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갈 것이다. 향후에도 주요 아동학대 사건 관련 유관부처.기관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경찰은 기꺼이 참여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부디 오늘 논의된 개선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다시는 '대구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주기적으로 재정비하고,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입양사망사건으로 본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업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아동학대사건은 입양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노력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본 입양절차의 문제점으로 부모들 간의 합의와 가정법원에서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가능한 '민간입양'으로 입양된 아동은 입양된 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동학대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입양가정에 이미 여러 명의 입양아동들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입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할 것이며, 입양심사단계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발견한 기관은 즉시 법원에 통보하여 양부모의 아동학대사실이 입양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양을 진행한 후에는 불시에 입양가정에 방문을 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완해야할 것이다.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통해서 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경찰배치

앞선 발제에서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간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감한다.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에서는 경찰이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통보시기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통보가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할 때 서로 동행출동을 요청하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2항에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학대행위자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을 직접적으로 인터뷰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의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사건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또다시 방치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하고 경찰 대상 아동학대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원 교육과정 신설

현재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기본교육은 사회복지, 심리 전공자 등 자격을 갖춘 상담원들이 100시간동안 아동복지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의 경우 조사기술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직군이다 보니 상담원들이 직접 실무에 투입되기 전에 지금의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실무수습(OJT: On the Job Training)을 통해 최소 6개월~1년 정도 지도교육을 받아야 전문상담원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체계적인 교육을 토대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손실 방지

아동학대 업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으로 인력 확보가 어렵고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상담원 전문성 향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2.5년이다. 대부분이 채 3년이 되기 전에 현장을 떠나고 있어 전문 인력의 이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무난이도를 적용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1명당 이용자수는 168.2명이지만 수용인력은 14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비해 인력 부족분이 월등히 높으며 그만큼 부족인원에 따른 서비스 유실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및 기관부족으로 아동보호체계 내의 위험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단위: 명)

구분	현재 (1명당 이용자)	인력배치 수정	
		수용 인력	인력부족 분
아동공동생활가정	7	6.1	0.9
아동양육시설	7	6.3	0.7
장애인거주시설	10	9.2	0.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	3.3	0.7
양로시설	12.5	11.6	0.9
노숙인요양시설	50	44.5	5.5
정신요양시설	25	22.2	2.8
지역아동센터	26.9	25.3	1.6
아동보호전문기관	168.2	142.9	25.3
사회복지관	64.5	59.6	4.9
지역자활센터	113	103.5	9.5

참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발췌

본 사건처럼 아동의 이야기가 아닌 몇몇 어른들이 증언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증원 및 증설을 통해 상담원 1인당 적절한 사례 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3. 아동학대 사망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필요성

1) 목적 및 필요성

아동학대의 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사건들을 되짚어보고 현재 아동보호시스템 내에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 아동학대 사망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 사망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업무협조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 보호 증진 및 아동 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조직 구성

·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구성·운영하며 다음 위원이 소속된 조직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구성됨

- 위원장: 국회의원
- 위원: 보건복지부 담당, 교육부 담당, 교사, 경찰, 검사, 의사, 법의관(검시관), 지방자치단체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건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응급구조대원, 아동 관련 학회 등

3) 주요기능

·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건 발생 원인 및 분석
· 사건 발생 전후, 관계 기관의 적절한 대처 여부 파악
·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및 사망 아동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보호시스템 개선 및 대책 마련
· 아동사망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한국사회가 아동학대로 연간 치러야 할 비용이 최대 76조원(정익중·김수정, 2016)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를 인식하고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아동 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앞서 논의한 사항들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아동학대 사망진상조사를 통해서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안문희 연구위원(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